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과 모형 제안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종명

2023년 2월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과 모형 제안

지도교수 황 경 수

박 종 명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박종명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주 경



위 원

김 형 아



위 원

한 상 진



위 원

양 영 준



위 원

황 경 수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Creating the main elements of a model for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as a model suitable for Jeju, and
proposing a model

2022. 12

Park Jong M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degree of 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과 모형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 요소를 제시하고, 그 요소를 반영하는 모형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두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델파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구성한다. 둘째, AHP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소를 도출한다. 셋째,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의 모형을 구축한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모형 구축과 조례 제안, 그리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중요 요소에 대한 인식은 제도, 인력, 조직, 예산 순으로 대분류된다. 중요 요소들의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위) 정부계획수립
- (2위) 전문인력의 채용
- (3위) 조례 신설
- (4위) 행정조직 신설
- (5위) 공유관련 DB 구축
- (6위)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
- (7위) 공직자 사전교육
- (8위) 소통전문가 양성
- (9위) 국내외사례분석
- (10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 (11위) 심사위원회 신설
- (12위)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 (13위)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 (14위)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 (15위) 특별회계의 틀 설정

- (16위)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17위)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 (18위)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 (19위)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 (20위) 공유자산 확보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모형 1. 행정부만 내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2. 행정과 민간부문이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3. 민간부문 간 협력 통한 서비스 제공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조례를 제안하였다. 조례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정의 : 공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 4) 민간부문의 역할과 참여
- 5)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 내용
- 6)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지원
- 7)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지원
- 8) 보조금 등 지원
- 9)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촉진위원회의 설치
- 10) 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 11)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 1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 13)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설치
- 14)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운영

정책제언으로는 제도, 조직, 인력, 예산 측면에서 제안했다.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제언도 추가하였다.

현시점에서 제주지역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가 체계화되려면 먼저 공직에서의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거버넌스적 접근, 협동 생산적 접근, 민간기법의 도입과 수익배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도입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기반행정의 가치에 대해 공직 담당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국가모형의 맥락에서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공유활동, 공유기반행정, 공유기반행정 모형, 공유경제, 공유기반행정 서비스, 공유정책

ABSTRACT

Creating the main elements of a model for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as a model suitable for Jeju, and proposing a model

2022. 12.

Park Jong Myou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important elements for establishing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model that reflects the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ele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main areas. First, this study created a questionnaire for AHP through the Delphi survey. Second, this study inferred the important elements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s with the results of an expert survey called AHP. Third, this study created a model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that can be applied to the Jeju region. At the end of this study, we propose a model and a local code. And we proposed policies to make the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ystem a succe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riority of important elements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is as follows.

- (No. 1) Establishing government plans
- (No. 2) Recruitment of professional personnel
- (No. 3) Establishment of self-governing laws
- (No. 4) Establishment of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n charge of shared administration
- (No. 5) DB construction related to shared administration
- (No. 6) Creation of government data centers
- (No. 7)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 (No. 8) Cultivating communication experts
- (No. 9) Analyz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 (No. 10)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 (No. 11) Establishment of the judging committee
- (No. 12) List organizations that can apply for subsidies in accordance with local laws and regulations
- (No. 13) Creating a PR channel that can connect organizations
- (No. 14) Creating a dedicated business department
- (No. 15) Setting the framework for special accounting
- (No. 16) Expansion of the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 (No. 17) Secur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from general accounting
- (No. 18) Creating governance that connects with community service
- (No. 19) Injecting and entrusting the budget to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shared administration
- (No. 20) Securing Shareable Assets

This study proposed three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models by referring to the results of AHP analysis.

Model 1. Shared-based administrative service model within the administrative sector

Model 2.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model in which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private sector form a form of governance

Model 3.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model that provides

administrative services by supporting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proposed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systematization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Jeju region. The contents of the autonomous laws are as follows.

- 1) purpose
- 2) Definition: 'sharing',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 3)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4) Role and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 5) Contents for systematization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s
- 6) Support for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s
- 7) Cooperation and support with the private sector
- 8) Subsidies, etc.
- 9) Establishment of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Promotion Committee
- 10) Operation of Sharing Promotion Committee
- 11) Establishment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upport center
- 12) Operation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support center
- 13) Installation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platform
- 14) Operation of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platform

This study proposed policies in terms of system, organization, manpower, and budget.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suggested policies necessary for planning.

key words : sharing activities, sharing-based administrative, a model for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a sharing economy, a sharing-based administrative service, a sharing polic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론	4
제2장 제주지역 공유전통, 공유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5
제1절 제주지역의 공유관련 전통 검토	5
1. 물방애의 공유와 활용	5
2. 공동목장(마을 공동목장)에서의 공유활동	6
3. 상여(화단계)를 통한 마을의 시설과 활동 공유	6
4. 원담을 통한 어로행위 공유	7
5. 그릇재(계)를 통한 위기 대응 공유	7
6. 용수집단을 통한 음용수 시설 공유	8
7. 도댓불 관리를 통한 등대 공유활동	8
8. 제주도 공유전통 검토를 통한함의	9
제2절 관련 이론 검토	9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효과	9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11
3.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핵심가치 추론	11

4.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유형	13
5. 관계국가모형에 따른 공유의 중요성	14
6. 공유가치 성장개념의 등장과 정부의 역할	14
7. 국가경쟁력 설명 다이아몬드 이론과 정부의 영향	16
8. 전자정부 시대의 행정 정보공유	16
9. 이론연구를 통한 공유행정 요소 도출	18
제3절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9
제3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 연구모형설계	22
제1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분석의 틀	22
제2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례분석의 틀	23
제3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구축 위한 델파이와 AHP 분석 틀	24
제4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유사사례와 사례분석	27
제1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유사사례	27
1. 미국의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s Center : SSC)	27
2. 영국의 공공부문에서의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 활용	28
3. 서울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29
제2절 우리나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분석	31
1. 우리나라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공유 사례분석	31
2. 농기계의 공유 사례분석	35
3. 양조장 제조설비 및 공동물류창고의 공유 사례분석	40

4. 마을만들기사업 설비공유 사례분석	44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공유요소 도출	49
제5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DHP 분석	51
제1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중요 요소 분석	51
1. 요소 도출을 위한 델파이 분석	51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선정을 위한 AHP 조사 분석	56
3. AHP를 통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우선순위 분석	57
제6장 공유기반 모형과 조례 및 정책제언	68
제1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모형 제안	68
1. 모형개발을 위한 전체 요소들	68
2. 유형별 모형 제안	72
제2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조례안 제안	79
1. 제주지역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조례안 내용	80
제3절 정책제언	84
1. 제도적 측면의 정책제언	84
2. 조직과 운영 측면의 정책제언	85
3. 인력 측면의 정책제언	86
4. 예산 운영상의 정책제언	87
5.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87

제7장 결론	89
【참고문헌】	91
【부록 1】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93
【부록 2】 델파이 2라운드 설문지	94

표 목 차

<표 2-1>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사점 정리	20
<표 3-1> 사전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AHP 분석 틀	22
<표 4-1> 우리나라 교통관련 빅데이터 공유현황	32
<표 4-2>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36
<표 4-3>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41
<표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45
<표 5-1>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1차 DHP 조사내용 ..	51
<표 5-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2차 DHP 조사내용 ..	54
<표 5-3> AHP 설문 내용 체계도	58
<표 5-4> 1단계 4개 부문 중요도 분석 결과	60
<표 5-5> 2단계 제도 부문 중요도 분석 결과	61
<표 5-6> 2단계 조직 부문 중요도 분석 결과	63
<표 5-7> 2단계 인력 부문 중요도 분석 결과	64
<표 5-8> 2단계 예산 부문 중요도 분석 결과	65
<표 5-9> 1·2단계 통합분석 결과(중요도)	67
<표 6-1> 모형별 특성 정리	79

그림목차

<그림 2-1> 물방애	5
<그림 2-2> 공동목장	6
<그림 2-3> 상여	6
<그림 2-4> 원담	7
<그림 2-5> 그릇채	7
<그림 2-6> 용수집단	8
<그림 2-7> 도멧불 관리	9
<그림 2-8> 행정정보 공유화 행정서비스의 발전 방향	17
<그림 3-1> 전체 연구의 흐름도와 분석의 틀	23
<그림 4-1> 농기계 공유현황	40
<그림 4-2> 양조장 제조설비 공유현황	44
<그림 4-3> 마을만들기사업 공유현황	49
<그림 5-1> 1단계 4개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60
<그림 5-2> 2단계 제도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62
<그림 5-3> 2단계 조직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63
<그림 5-4> 2단계 인력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64
<그림 5-5> 2단계 예산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65
<그림 6-1> 행정부문 내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그림	74
<그림 6-2>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행정서비스 모형	76
<그림 6-3> 민간부문 간 협력 통한 서비스 제공의 행정서비스 모형	7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전자정부 상황이 일반화되었고, 고객의 일상도 온라인시대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행정서비스에서 공유의 개념이 도입되는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이러한 상황을 행정서비스에 연결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첫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모델을 구축해서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를 제안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현재 농업기술공유, 빅데이터 공유, 농기계 공유 등에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내용들이 실시되고 있다. 김경섭(2020, 10)은 최근 공공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 주민정보, 위치정보, 교통정보 등 민간에서 보유하기 어려운, 그리고 활용 가치가 높은 행정·공공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는 이러한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하거나 정부 내에서 구체적 체계를 제안하지 못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내용을 검토하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을 제안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시스템 위에 공유서비스 시스템을 추가 제공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행정공유 차원에서 행정서비스를 공유개념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셋째, 공유개념에 블록체인과 같은 탈중앙과 공유기반의 기법을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상황이 되었다. 전자화된 일상의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공유라는 개념의 이념을 적용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논의할 상황이 된 것이다.

넷째, 규모가 작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 제주도)에서도 행정체계 내에 공유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 기업, 민간이 모두 참여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체계를 제안할 상황이 되었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해야 할 사명(mission)을 공유하고, 민간과 기업, 지방정부가 함께 달성하기 위해 공유의 개념을 확장하는 행정서비스체계가 논의될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여섯째, 행정에서 고객이 프로슈머로서 행정서비스의 창조자가 되는 실정에 부합하는 공유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경섭(2010, 11)은 최근 국민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정책 수립단계에서 종결단계까지 관여하는 정책참여자이자, 이용자이고, 다시 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슈머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이 프로슈머인 행정 고객들을 수용할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프로슈머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민간단체나 공유를 원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공유개념의 도입과 참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의 배경을 제주지역과 연결하여 보면,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제주지역 선조들의 공유라는 체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노력을 현시점에서 행정 시스템화했을 때 서비스의 내용이 제고될 수 있겠다는 동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제주지역은 각종 ‘계’와 ‘집’, ‘수눔음’이라는 공유형 협력 기제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김인성 등(김인성 외, 2014)은 제주지역의 협력형 수눔음 현상 등이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을 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생활을 가능하게 유지해왔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문화가 있기 전 각 가정에서 관혼상제의 예를 치르던 시대에 필요한 그릇, 상여 장비 등은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준비하고, 규칙을 정하여 임대하는 풍습을 유지해왔다. 제주지역의 경우 공동목장이나 해녀바당 등 마을 단위나 조합 등에서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공동배분 하던 공유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외에 포구, 밀물과 썰물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 원담, 물을 공급받았던 용수 등의 작업에서는 옆 마을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봉사하고, 그 서비스는 공유하는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행정서비스의 공유와 연결한다면 뉴거버넌스 개념과 연결되어 새로운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맥락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겠다.

제2절 연구의 목적

국가 예산의 제약과 자원 낭비와 환경훼손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의 경제, 나눔의 경제, 인간중심의 경제, 도덕적 경제를 표방하며 나온 개념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안명옥, 2012, 372-399). 최근의 국가들은 행정서비스를 독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장에서 공유경제의 개념이 필요했듯이 행정에서도 자원을 아끼고, 효율적 생산과 분배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의 중심에 ‘공유’라는 개념적 접근이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로나골드(2012) 등에 따르면 이러한 공유경제의 개념은 자본주의 경제의 반성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본다. 첫째, 경제 불황의 극복이다.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통한 공유주택에 대한 개념의 도입이 한 예가 된다. 둘째, 세계에 걸쳐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해결이다. 2004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0인의 재산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 인구의 소득보다도 큰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난의 덩어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등의 문제해결을 같이 고민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나의 맥락이다. 셋째, 전 지구적 환경의 위협이다. 기후변화가 사회계층의 계급화를 가속화시켜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맥락도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넷째,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이다.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은 다원적 사회 내에서 희생양을 찾게 하는 구조를 갖게 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의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의 개념은 단지, 시장경제 내의 개념이기보다는 지구상의 구조화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한 지구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공유라는 개념을 연결하게 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 요소를 제시하고, 그 요소를 반영하는 모형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첫째, 델파이조사(DHP)를 통해 설문지를 구성하고 둘째, AHP라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중요 요소

를 도출하게 된다. 셋째,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의 모형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과거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행정서비스체계를 제안하는 것에 지향이 있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가 일반화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조사를 통해 주요 요소를 찾고, 그 내용을 반영하는 체계와 모형을 만들게 된다. 그 체계가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안하고, 조례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체계가 현실화되기 위한 정책제언들을 하게 될 것이다.

제3절 연구 범위와 방법론

본 연구의 범위로써 첫째, 공간적 범위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내용적 범위로써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시간적 범위는 과거의 부분적 사례를 참고하여 미래의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분석은 과거와 현재의 시점, 제언은 미래의 시점을 중심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첫째, 전문가 조사로써 델파이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고, 3라운드에 AHP 조사를 방법론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DHP 조사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요소 중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참고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둘째, 과거의 사례와 성공사례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찾는 사례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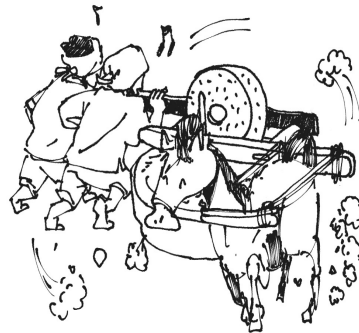
셋째,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출하는 문헌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게 된다.

제2장 제주지역 공유전통, 공유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제1절 제주지역의 공유관련 전통 검토

제주의 삶에는 나눔과 공유가 체질화되어 있었다. 계, 재, 수놓음, 케, 회 등의 용어들이 공유공동체의 모습이며 활동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모습을 안명옥(안명옥, 2012, 391)은 공유경제의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공유의 DNA가 있다고 하듯이 제주도민들의 사회생물학(Socio-Biology)(신영복, 2005, 415)적 용어로 보았을 때 공유의 사회적 DNA가 집단 무의식, 혹은 집단 지성에 자리매김하여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반에 행정이 촉매 역할을 한다면 한국형 공유경제, 제주형 공유경제의 방향을 설정하고 모형을 만드는 데에 크게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공유행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전통적 활동에서의 제주지역 내의 공유경제활동 사례를 정리코자 하였다. 김인성·황경수 등(김인성 외, 2014)은 제주지역에서 공유기반 전통을 신뢰와 협력 등의 요소와 연결하여 조사한 내용이 있다. 그 논문의 그림을 인용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몰방애(강일 그림)
출처 : 김인성 외, 2014, 94.

1. 몰방애의 공유와 활용

보리나 조라는 곡식을 도정할 때 사용하는 연자매를 몰방애라고 한다. 몰방애는 농기구를 공유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구역별로 회원제 형태로 운영하며 비회원이 이용코자 할 때는 공유의 대가로 일정부분 샅을 내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물방에는 처음 만들 때도 회원들은 공유에 가담한다. 땅을 내놓거나 돈을 내거나 노력 봉사하기도 한다. 그 결과 활용도 공유하는 개념이다.

회원이 아닌 경우가 활용코자 할 때는 그 회원조직에서 일정부분 곡물 등으로 사용료를 내는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2. 공동목장(마을 공동목장)에서의 공유활동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 목초지, 건물, 목책 등을 설치한 장소를 목장이라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 제주도)의 마을 공동목장은 공유개념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도 마을에서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관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이를 공동배분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림 2-2> 공동목장(강일 그림)
출처 : 김인성 외, 2014, 95.

3. 상여(화단계)를 통한 마을의 시설과 활동 공유

화단이라고도 하는 상여는 제주도에서 장례식 때 시신을 장지에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말한다. 상여를 보관하는 곳을 화단지라고 하였다.

이 상여와 화단, 화단집은 소비를 위한 공유활동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을 전체가 회원이 되어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그 마을이라는 개념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큰 마을의 경우는 ‘반’이라는 단위에 따라 상여를 준비하기도 했다.



<그림 2-3> 상여(강일 그림)
출처 : 김인성 외, 2014,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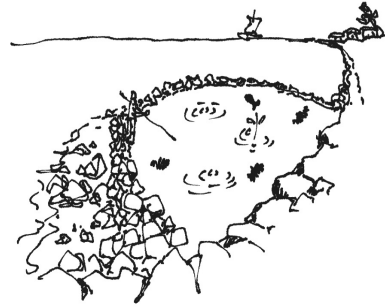
4. 원담을 통한 어로행위 공유

‘원’이라고도 하는 ‘원담’은 파도가 많지 않은 해안에 돌담을 쌓아 바닷물이 밀려들 때 멸치·고등어 등의 어족이 여기에 들어오게 하고,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 돌담 안에 남아 있던 것을 포획하는 어로 형태이다.

이 원담에서의 공유형태는 원담을 만들 때와 원담의 생선을 수확할 때 연결되어 나타난다.

동네에서 만들어서 동네 주민 전체가 공유하는 경우가 있고, 몇몇 회원들이 만들어서 공유하는 형태가 있다. 대부분 마을이나 회원들이 수익을 나누어 가졌으나 ‘멸’같은 종류의 고기가 많이 나타나면 공개적으로 활용하게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마을의 원담들이 관광 자원화하기도 하면서 생산에서의 공유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림 2-4> 원담(강일 그림)
출처 : 김인성 외, 2014, 99.

5. 그릇재(계)를 통한 위기 대응 공유

동네 사람 중 뜻이 맞는 사람끼리 돈을 내어 그릇을 사서 공동으로 쓰는 모임을 그릇재라고 한다. 제주도의 경우 관혼상제 행사가 읍지부와 다르게 장기간 열리거나 그 규모가 크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관혼상제 행사를 치를 때 필요한 장비들이 큰 규모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릇계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한 집에서 사용하면, 보관했다가 다른 집에서 일이 생겼을 때 가지고 가서 사용한다. 사용 후 손실된 부분은 그 빌려 갔던 집에서 채워놓는 방식을 택했다.



<그림 2-5> 그릇재 (강일 그림)
출처 : 김인성 외, 2014, 100.

이러한 형태의 공유는 그릇 이외에도 술, 쌀, 돼지고기 등에 해당하였다. 관혼상제의 큰일을 치루기 위해 항상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원들끼리 준비하다가 어느 한 회원에게 일이 생겼을 경우 그 회원집에 한 번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적 공유형태이다.

이런 경우 다른 회원이 사용할 경우는 그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고 하도록 하는 규칙을 두어 운영을 하기도 했다.

6. 용수집단을 통한 음용수 시설 공유

지표수나 용천수가 없을 때, 식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소 등의 먹을 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수를 만들 때 협력하는 모임을 용수집단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이나 바닷가 지역에 용천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생산과정에서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우물을 팠던 사례이다.



마을별로 공유해서 우물을 만들고, 마을이 관리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용에 있어서도 회원 중심이었으나 외부의 구성원이 상시적이지 않으면 용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림 2-6> 용수집단(강일 그림)
출처 : 김인성 외, 2014, 101.

7. 도덧불 관리를 통한 등대 공유활동

예전 제주도 마을의 기름으로 켜는 작은 등대를 도덧불이라고 한다. 도덧불관리도 공유형태를 띠고 있다. 노력에 대한 대가의 지불에 수익자들이 부담을 공유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동네 한 노인이 저녁에 도덧불에 불을 켜고 관리하면 어부들이 그 부분에 대해 보답하는 형태의 공유이다.

8. 제주도 공유전통 검토를 통한함의

이상의 제주도 전통의 공유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척박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서 공유였다는 점이다. 경제적 활동이나 재난극복, 관혼상제 등 각종 상황에서 긴급하기 위한 대응 관련 사회적 보험으로써 공유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림 2-7> 도덧불 관리(강일 그림)
출처 : 김인성 외, 2014, 99.

둘째,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공유하는 경우, 사용에까지 연결되어 공유체계를 갖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는 점이다.

셋째, 활용에서의 공유일 때는 수익에 대한 분배에 형평성을 적용하는 규칙들을 만들어서 공유체계가 유지되도록 했다는 점이다.

넷째, 제주도 공유의 전통 사례를 정리하면 물방애는 시설의 조성 and 이용의 공유형태, 공동목장의 경우는 공유지의 관리에 규칙을 추가하여 과실 공유형태, 상여(화단계)는 공동체 단위별 시설 이용의 공유와 행사 참여의 협력 형태, 원담의 경우 시설의 조성 때 노동력의 협력과 이용의 공유형태, 그릇재의 경우는 물품구매 시 협력과 이용의 공유형태, 용수집단의 경우는 노동력의 협력과 이용의 공유형태, 도덧불의 경우는 이용의 공유와 비용의 공유형태이다.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면 제주 공유의 전통 사례를 크게 유형화해보면 첫째, 시설 조성 때 금전적 제공과 노동력 협력 후 이용의 공유, 둘째, 기존 시설에 규칙을 정하여 공유와 관리로 크게 이원화할 수 있다.

제2절 관련 이론 검토

1. 공유경제의 개념과 효과

공유경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하면 “이미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업 소비를 말한다. 배타적인 소유가 소비의 기본원리였던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유희자산을 타인과 나누어 사용한 공유행위의 하나이다. 유희자원의 효율적인 재사용을 통해 전통적인 생산력을 대체하고, 수요와 공급의 모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의 하나.”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창기, 2020, 74).

공유경제를 벤클러(Benkler)의 개념을 들어 사회복지와 연결하여 보면 “공유경제는 가격체계가 아닌 사회관계와 공유의 원리를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이나 정책적 개입, 즉 복지정책을 통해서만 빈부격차나 불평등을 완화했던 부분을 자원의 공유를 통해 비영리 부문에서도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접근하고 있다(이상호, 2019, 190).

공유경제를 행정 부문에 연결하여 정리할 때 행정정보공유의 개념에서 유추할 수 있다. 참고로 행정정보공유는 공공정보를 공유하는 범위나 정보의 이용자나 제공자 등의 범위에 따라 협의적 개념으로는 정부조직단 공유를 의미하며, 광의 개념으로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민간, 민간과 민간 간의 범정부 차원의 공유를 의미한다(박정훈 외, 2009, 247).

이러한 공유경제의 개념을 본 연구와 연결하여 정의하면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관계와 공유의 원리를 활용하여 정부 내에서, 정부 간에, 정부와 민간관계에서, 민간관계에서 절약하고, 생산력을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유경제 개념 도입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오정민 외, 2019, 13-14). 첫째, 초기의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했다는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생산과 소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자원의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제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그 효과를 행정에 적용하면 생산과정에서의 시설 설비의 공유를 통한 가치를 더 추가할 수 있다. 둘째, TIME지(2011.05.17.)가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소개한 가치는 사회적 관계를 근간으로 협력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가상공간의 사회연결망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유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관계 복원 등과 같은 공동체 지향적인 가치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가치와 효과는 공유행정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 행정의 영역에서도 사용 가치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협력적 생산과 소비가치, 효율적 자원 활용과 자원절약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Shared Services in Public Sector)란 크게 두 단계의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첫 단계는 행정조직 내에 산재해 있는 유사한 기능을 한 곳에 집중하여 제공함으로써 중복성을 제거하면서 효율적·통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서 행정기관은 본연의 핵심 업무에 역량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념이다(홍길표, 2014, 36).

둘째 단계는 공유경제의 개념과 연결된 맥락에서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향유에 대한 민간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홍길표 외(2014)에서는 공유서비스라는 것은 민간부문에서 먼저 제기된 개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정부 조직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공유서비스 공급방식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민간부문의 욕구를 파악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로 인해 얻어지는 과실을 다시 민간에게 환원시킴으로써 선순환적 구조가 완성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추가하는 셋째 단계는 민간부문의 공유기반 서비스 제공에 행정부문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제도화하고 예산 등을 지원하여 민간부문 공유기반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3.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핵심 가치 추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행정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출발하는 한 축이 있다. 둘째,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협력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1) 핵심 가치로서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 창출

행정영역의 사회적 책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과거의 합법성 추구를 중시하던 때에서 최근에는 변화에 대한 수요 대응성으로 변하고 있다.

기업의 영역에서도 과거에 논의되어오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다(이규영 외, 2015, 118). 그 개념과 가치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CSV(Creating Shared Value)로 모이고 있다. CSR의 개념 속에는 동반성장, 사회공헌활동, 환경경영, 또는 컴플라이언스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CSR 개념 속에서도 최근에는 마이클 포터의 공유가치 창출론이라는 CSV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공유가치 창출론(CSV)은 기업의 체질을 사회와의 호흡을 통해서 개선하는 전략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공하던 제품과 서비스 전체에 대해 환경, 노동, 부패,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기업의 주요 사업군을 혁신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을 줄이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2) 핵심 가치로서 뉴거버넌스와 협력

공유의 개념에는 행정서비스 제공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개념과 연결된다. 기존 거버넌스 개념에서 확장된 뉴거버넌스는 핵심 가치에 협력적 개념까지를 추가한다. 뉴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의 하향적 서비스와 시장 중심의 자율적인 수단 사이의 제3의 길과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버넌스 개념에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다자간 협상, 숙의 등의 장치를 포함하는 협력적인 제도로 발전한 개념이다(김동영, 2011, 9).

뉴거버넌스 개념은 개혁적 관점에 추가하여 협력과 신뢰를 수반하는 민주적 정체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신공공관리(NPM ; New Public Management)가 정부, 민간, 비정부 기구 등과 연결하여 정부 서비스 전달망의 개혁을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해보려는 미시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행정 개혁적인

1) 기업경영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기업경영이 법령, 규정, 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맞도록 하는 내부 통제 장치이다.

노력의 측면이다. 이에 비해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 파트너십, 공사협력, 신뢰 등을 강조하는 보다 거시적이고 민주적인 정체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권기현, 2007, 36). 피터(Peters)와 피에르(Pierre), 로데(Rhodes) 등의 뉴거버넌스의 개념에서 공공이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더 많은 ‘협력과 조정’, ‘타협과 연결’을 강조하는 측면과 연결된다.

4.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유형

구두(Gould 외, 2007 ; 홍길표 외, 2014, 37)는 공공부문에서 채택할 수 있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유형을 네 가지 모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공유서비스센터(SSC)의 거버넌스 지배구조와 조직화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유서비스센터의 형태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유형을 결과 화하는 제도적 접근의 사례라 규정하고, 공유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기관업무운영형(COE : Government Center of Excellence)이다. 정부 기관 내부에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정부기관 내부 조직으로 편제하고 있는 정보화 담당관실, 인사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의 기능인 재무, 인사, 정보화, 조달기능을 행정공유서비스 대상 업무로 삼는다. 이는 행정업무의 공유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미 우주항공국의 조달기능을 수행하는 NASA의 공유서비스센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둘째, 정부 공유서비스 제공형(GSSP : Government Shared Services Provider)이다. 행정기관 내부고객 또는 외부의 특정 정책고객에게 특정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유형이다. 행정기관 내부는 물론 외부 고객기관에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교통부의 센터(ESC, Enterprise Services Center)가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

셋째, 민간기업제공형(CSSP : Commercial Shared Services Provider)이다. 민간기업이 공공부문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한 행정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IBM의 공공부문 공유서비스센터가 하나의 예라 한다. 2008년 호주 퀸스랜드 주정부와 IBM가 인적자원관리 부문에 설립한 공유서비스센터가

하나의 예라 한다.

넷째, 민관협력파트너십형(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다. 정부와 민간이 합작방식으로 조직을 설립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행정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국 내무부에서 국가비즈니스센터의 일부 기능을 민관협력파트너십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5. 관계국가모형에 따른 공유의 중요성

임채원 외(2012, 313)에 따르면 관계국가모형은 사회적 문제의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는 현대 국가에서 공공, 민간, 시민단체가 공동 책임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와 공유된 목적을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실행을 통해 공공가치창조를 실현하는 국가 모델이다.

이 관계국가모형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기업-시민사회를 이해관계자로 하는 네트워크가 강조된다.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관계국가모형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재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관계국가모형에서는 정부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구성을 요한다. 네트워크 구성 주체인 이해관계자들 상호 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동 책임 실현 과정에서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공유가치 성장개념의 등장과 정부의 역할

공유가치 성장(shared value growth)개념은 발전국가의 불균형 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이 가치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균형성장을 의미한다(임채원 외, 2012, 295). 이 공유가치 성장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포용적 성장을 말한다.

자본주의발전 단계를 중심으로 임채원 외(2012, 300)가 정리하는 맥락을 보면 제1세대 자본주의는 18세기에서 1920년대까지 지속된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

임 자본주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제2세대는 러시아 혁명과 대공황시대이다. 이때는 구조적 위기를 거치면서 1930년대에 대규모 실업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케인지언적인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경기조절을 해야 한다고 보는 '정부개입의 시대'이다. 제3세대의 세계자본주의는 '경쟁의 시대'이다. 1980년대 초반에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으로 탄생했다.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을 거치며 이 시기의 경제적 인식을 대표하는 것이 하이에크(F. Hayek)의 신자유주의와 프리드먼(M. Friedmans)의 통화주의이다. 이 시기의 인식은 정부는 언제나 비효율적이며 정치적 규제와 정책개입은 정부의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며, 규제 완화와 민간화와 민간위탁,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작은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것이다. 제4세대의 자본주의는 본 연구의 공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협력의 시대'를 특징으로 한다. 효율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성장의 유포와 빈곤의 유발로 결과 화 되었다. 협력의 시대에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핵심적 의제가 되고, 창의적 사회에서 정신적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대이다.

제4세대의 자본주의는 공유가치 성장과 맥을 같이하는 협력의 시대라 할 수 있다. 협력 시대 공유가치의 성장은 가치사슬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체제이다. 이해관계자 간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과 사회가 동시에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유가치 성장은 소비자, 생산자, 경쟁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경제적 사회적 커뮤니티를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학교, 병원 등 사회적 시설과도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가치 성장은 기업, 정부, 비정부기구가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공유된 가치의 기반을 갖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성장이다.

이 공유가치 성장시스템에서는 정부의 정책에서도 기업과 민간부문 기구, 시민들이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인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신자유주의적인 작은 정부와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발전국가에서와 같이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에 의한

상호의존적이라 할 수 있다.

7. 국가경쟁력 설명 다이아몬드 이론과 정부의 영향

국가경쟁력 요소에 대한 설명이론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이론에서 정부는 외부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다. 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으로써 거버넌스와 공유기반행정 등의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최성락, 2012, 107).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이론 중 포터(Porter)의 ‘다이아몬드 이론’은 기업의 경쟁력에 정부가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이론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업이 보유한 특정 자산, 기술, 조직 기법 등 대체 불가능하고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자연에 의존한다. 이를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요소 조건이다. 해당 산업에서 노동자나 인프라와 같은 생산 요소 조건이다. 둘째, 수요조건이다. 해당 산업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특성이다. 셋째, 관련 및 지원 산업과 관련 조건이다. 관련 산업들이 충분히 존재하는가가 해당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기업 전략과 구조 및 경쟁 조건이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쟁 구조가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산업 내의 기업 경쟁 구조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영향을 고려해야 국가경쟁력을 성찰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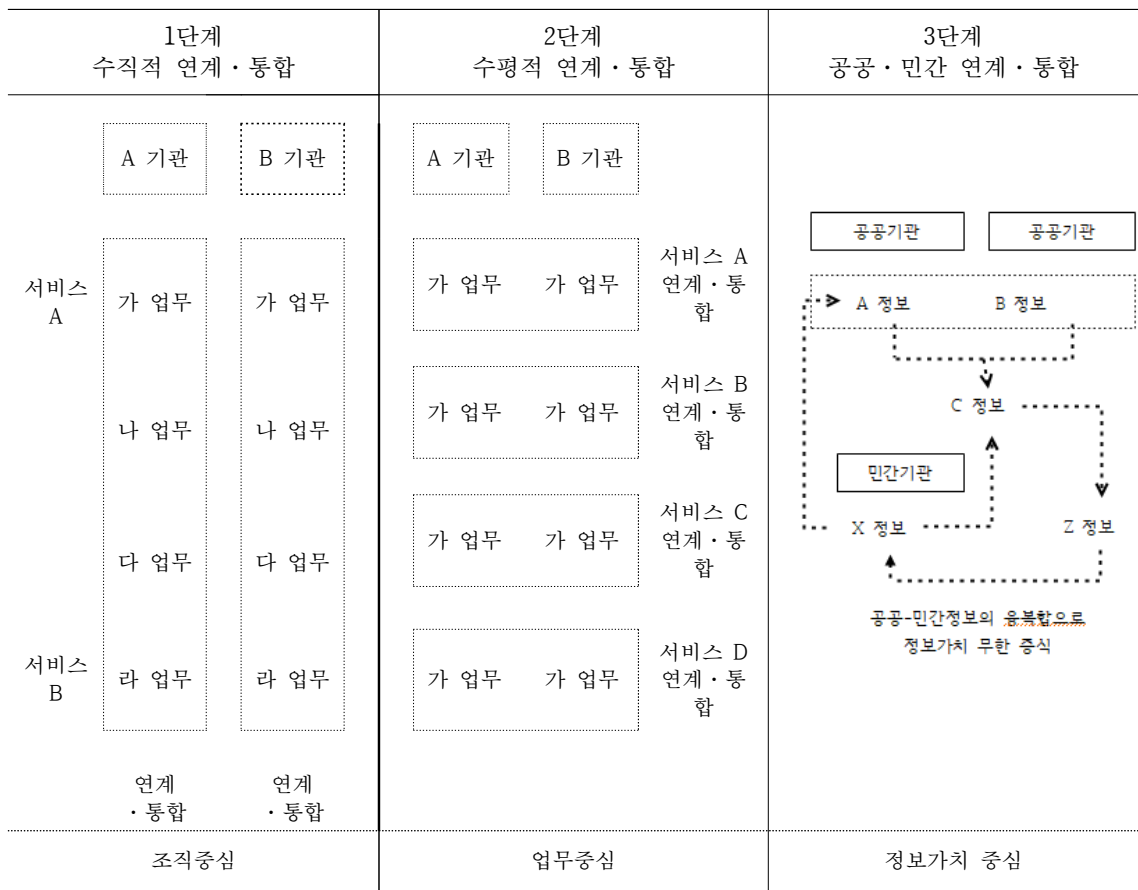
‘기회와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네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기회는 발명, 오일쇼크 등과 같은 외부 충격, 전쟁, 정치적 사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교육정책, 보조금, 조세 정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네 가지 요소에 긍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전자정부 시대의 행정 정보공유

전자정부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유기반은 주로 행정정보서비스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단계별 행정 정보공유의 상황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다음 그림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 정보공유는 초창기에는 기관별 통합으로 이루어

어지는 공유였다. 그림에서 1단계 해당 조직 중심의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2단계에서는 기관과 기관 간 업무의 공유상황이다. 이 시기는 수평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업무 중심의 단계이다. 3단계가 공공의 공유업무와 민간의 정보 간에 연계되는 단계이다. 공공과 민간정보의 융복합으로 정보가치가 무한으로 증식할 수 있는 단계이다.

<그림 2-8> 행정정보 공유화 행정서비스의 발전 방향



출처 : 김경섭(2010), “행정정보 공유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추계 학술발표 논문집」, p.1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는 정보 공유의 효과 극대화, 업무의 효율성 향상, 정보시스템 구축에서 발생하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김경섭, 2010, 1).

9. 이론연구를 통한 공유행정 요소 도출

관련 이론연구를 통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요소를 도출하고,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보니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시설공유 관련한 측면, 공유의 목적과 사회적 맥락 측면, 행정영역 공유의 지향적인 가치 창출 측면이다.

시설공유 관련한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였다.

- 1) 공유경제 유희자산의 공유
- 2) 공유경제 정보의 공유
- 3) 정보의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중복투자 방지

공유의 목적과 사회적 맥락 측면의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 1) 공유경제의 불평등 해소
- 2) 공유경제를 통한 자원의 절약, 지속가능발전유도, 사회적 관계 복원 등 공동체
- 3) 관계국가모형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서 정부가 민간과의 네트워크에서 협력을 유도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강조
- 4) 공유가치 성장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부 개념에서는 정부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포용적 성장을 유도해야 하고 상호의존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 5) 다이아몬드 이론으로서 국가론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행정영역 공유의 지향적인 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요소들이 다음과 같았다. 크게 다섯 가지였다.

- 1) 공유기반행정서비스 개념에서는 행정내부, 행정기관 간 유사 기능의 중복성 제거
- 2) 공유기반행정서비스 개념에서는 거버넌스적 접근으로 민간부문과의 협력, 그 결과의 민간으로의 배려 통한 민과 관의 협력 선순환 구조 구축
- 3) 공유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행정과 기업의 사회와의 공유가치 창출

4) 공유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뉴거번스적 협력과 조정, 타협과 연결 강조

5)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유형에서는 정부기관업무운영형(COE)으로써 행정 업무의 공유, 행정기관 내부고객과 특정외부고객에게 특별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정부 공유서비스제공형(GSSP), 민간기업이 공공부문 고객을 대상으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제공형(CSSP), 정부와 민간이 합작방식으로 조직을 설립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행정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파트너십형(PPP)이다. 이상의 요소들도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하는 모형구상에 외적 변수로서 고려 요소가 된다.

제3절 관련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임채원 외(2012)의 논문에서는 공유가치 성장론을 들어 현대의 자본주의는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사회, 기업, 행정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관계 설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론적 접근으로서 관계국가모형을 제안하면서 이 관계국가모형에서는 공공, 민간, 시민단체가 공동 책임으로 상호신뢰와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통의 이해와 공유된 목적을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실행을 통해 공공가치창조를 실현하는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김상민 외(2019)의 보고서에서는 지방정부가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 확대에 관한 관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내 유휴 물적·인적자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가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공유개념 재인식에 기반을 둔 공유도시(지역)로의 전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방향의 설정, 공유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인식, 공유경제의 명암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참여 주체 간 협력 및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제도 구축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민주(2015)의 논문에서는 공유자산에 대한 자치적 관리모델의 중요성 강조와 동시에 비판적 검토를 이행했다. 공유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크게 중앙 통제 모델, 사유 자산화 모델, 자치적 관리모델을 유형화하면서 연구하였다. 오스트롬이 제안한 자치적 관리모델은 공유자산의 비극화를 막는 방법의 하나다. 지역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자치적 관리모델에서의 특징 중 하나는 현재는 물론이고 신분 차별이 있던 과거에도 지역의 공유자산을 자치적으로 관리할 때 자산 이용과 이득 배분을 동등하게 했다는 점이다.

조성찬(2015)의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개발이 부동산 중심의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성상 토지 및 자연 자원의 사유화를 통한 상품화로 진행되며, 무엇보다 금융과 화폐라는 공유자원의 상품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결국은 제주도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유자원의 상품화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유자원의 이용 방법과 그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명석(2006)은 공유재의 관리는 일반적으로 자치적인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공유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의 관리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2-1>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사점 정리

선행연구	본 연구에의 시사점 정리	비고
임채원 외 (2012) 연구	공유가치 성장론으로 현대자본주의 문제 극복 제안	동인과 방향성측면
	시민사회, 기업, 행정 등의 새로운 관계설정 필요	체계구축 측면
	관계국가모형을 통해 신뢰와 협력 강조	체계구축 측면
김상민 외 (2019) 연구	공유개념 인식 확대	동인과 방향성측면

	공유경제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 인식	동인과 방향성 측면
	공유경제의 명암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체계구축 측면
	참여 주체 간 협력과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제도 구축	체계구축 과정 측면
김민주 (2015) 연구	지방단위, 마을 단위 등 자치적 관리 강조	체계구축 측면
	자산 이득과 이득 배분의 공평성 지향	동인과 방향성 측면
조성찬 (2015) 연구	부동산 중심 제주도 개발 공유자원의 상품화 경향 지적	동인과 방향성 측면
	공유자원의 이용 방법과 그 이용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강조	동인과 방향성 측면
조성찬 (2016) 연구	제주도 개발방식 비판 : 공유자원의 사유화 모델이었다고 비판	동인과 방향성 측면
	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가 자본이 토지와 자연 자원, 수자원 등 천연 공유자원과 화폐라는 인공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도록 하였다고 비판	동인과 방향성 측면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상품화를 유도하면서, 지대추구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개발방식을 해왔다고 비판	동인과 방향성 측면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 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해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동인과 방향성 측면
이명석 (2006) 연구	공유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제의 관리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체계구축 측면

선행연구분석 결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다소 부족하였다. 공유개념을 행정에 도입하거나 공유하는 민간부문의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이였다.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독립적 체계적 접근을 제안하는 데에는 다소 부족하였고, 본 연구가 이 부분에서 선행연구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체계가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함으로써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3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 연구모형설계

제1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분석의 틀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이론, 사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설문 요소 도출

둘째,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도입 동인 찾기

전문가 조사는 델파이기법과 AHP 조사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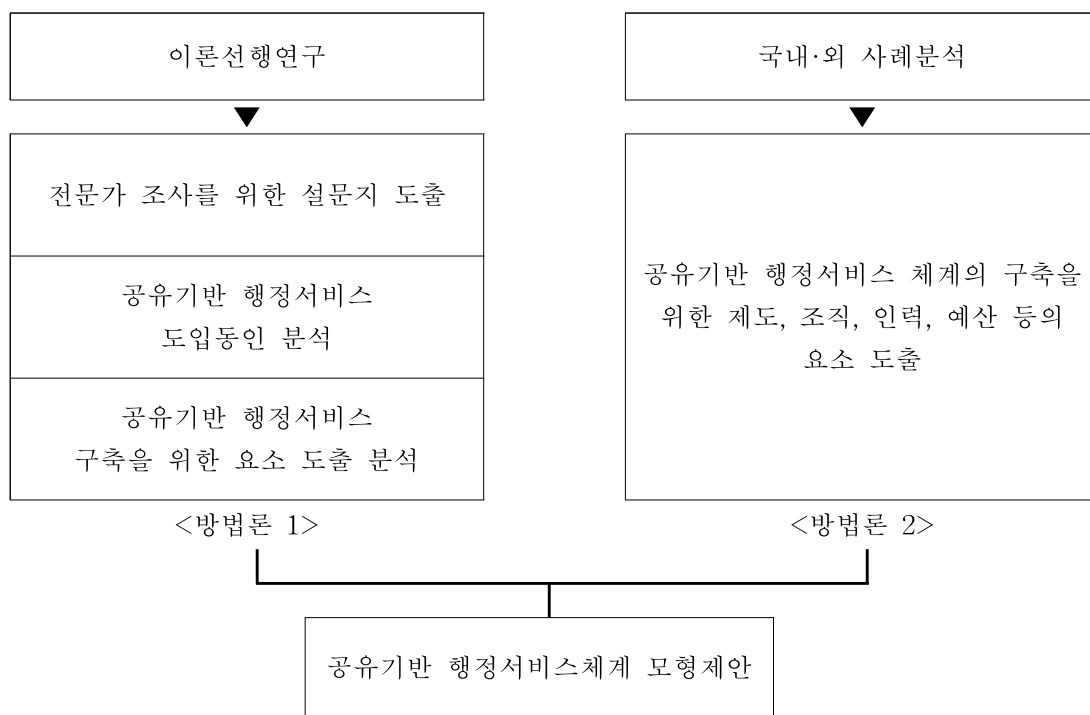
셋째,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체계구축을 위한 요소 도출

넷째, 사례분석을 통해 체계구축을 위한 요소 도출

사례분석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도, 조직, 인력 등의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때에 장·단 점에 관한 요소는 ‘성공요소’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틀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표 3-1> 사전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AHP 분석 틀

- 1라운드 :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라운드 : 주요 항목을 정리하여 추가할 사항을 다시 보냅니다. 다음 사항에 추가할 항목들이 있으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3라운드 : AHP 조사와 연결하여 설문을 시행한다. 두 가지 트랙인 바, 제1트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리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 동인, 제2트랙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요소 우선순위이다. 질문은 다음의 요소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3-1> 전체 연구의 흐름도와 분석의 틀

제2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례분석 틀

공유기반 관련 유사사례와 사례분석을 통해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유사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였다.

미국의 공유서비스센터, 영국의 공공부문에서의 공유서비스 활용,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공유 사례분석, 농기계 공유 사례분석, 양조장 제조설비 및 공동물류창고의 공유 사례분석, 마을만들기사업 설비공유 사례분석을 하였다.

셋째, 사례분석을 통한 공유요소 도출을 위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제도적 측면, 조직적 측면, 인력적 측면, 예산 측면의 틀에서 분석하였다. 그런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제3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구축위한 델파이와 AHP 분석 틀

델파이조사와 AHP 분석에 있어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들 도출하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를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수행했다. 그 결과 AHP 설문지를 만들었다.

델파이 1라운드의 대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이러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제주지역의 이러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가 기존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델파이 2라운드의 대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라운드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추가 질문한 것이다.

- 1) 다음은 공유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추가해주십시오.
-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적어주십시오.

AHP 설문조사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 항목들을 모두 제안하고, 그 우선순위를 물었다.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를 조사하여 요소별 중요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 방법인 AHP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였다. AHP 분석 방법은 Thomas L. Saaty 교수가 1980년에 창안한 다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모델로서, 복수의 대안에 대해 다기준 의사결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의사결정 문제를 분석적이고 수리적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AHP 분석 방법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 기준이 다수이며 복합적인 경우, 이를 계층(Hierarchy)화해, 주요 요인과 그 주요 요인을 이루는

세부요인들로 분해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1:1 비교(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산출하는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정부기관, 대학, 공공연구소, 민간기업 등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분석을 통해 주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델파이조사는 2라운드를 진행했다. 델파이조사 분석으로 파악한 요소들을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순위를 정하였다.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는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도출된 대항목 4개와 세부 항목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항목의 경우 공유기반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를 제도, 조직, 인력, 예산 등 분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 항목은 각 요소의 결정 요인을 대상으로 도출하였다. 각 항목의 도출지표와 지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조례 등 '제도'를 만드는 내용을 설정하였다. 세부 항목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의 계획수립,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조례 신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 보안장치 마련, 행정서비스 공유관련 피드백 체계를 통한 DB 구축, 국내·외 제도 관련 사례분석과 비교한 모니터링 등 5개 항목을 하위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조직'을 만드는 내용을 설정하였다. 세부 항목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국 단위의 행정조직 신설,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 행정 분야 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기획단 구축,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관, 민-관 간 홍보 채널 구축, 지역 사회봉사 단체들과 행정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항목을 하위항목으로 설정하였다.²⁾

2) 설문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과 관련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6가지였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국 단위의 조직 신설
-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행정파트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구축
- 행정파트내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관, 민-관 간 홍보 채널 마련

셋째,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인력’ 내용을 설정하였다. 세부 항목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채용,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위한 공직자 사전 교육, 행정서비스 공유에 관련 소통전문가 양성 교육, 행정 분야 내의 공유 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등 5개 항목을 하위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을 설정하였다. 세부 항목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특별회계의 틀 설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의 경우 공유할 수 있는 자산 확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진 조례에 공유기반 거버넌스 참여 단체들을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열거,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제3기구, 센터 등에 지방예산 투입하여 위탁 가능 체계구축 등 5개 항목을 하위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본 연구의 끝부분에 첨부하였다.

- 행정서비스의 공유를 위한 사회봉사와의 연결라인 구축. AHP설문의 균형상 소분류는 항목 당 5개로 한정하게 되어 조직 부문에서도 하나의 요소 ‘행정파트너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이라는 문항을 행태적 인력측면으로 해석하여 인력측면에서 그 맥락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 5개로 편성하였다.

제4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유사사례와 사례분석

제1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유사 사례

1. 미국의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s Center : SSC)

홍길표 외(2014, 36)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는 2007년 이미 30% 이상의 기업들이 기업 차원에서 공유서비스센터(SSC)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공유서비스센터는 다양한 조직에서 각기 수행하던 공통된 업무나 서비스를 통합해 전문적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독립적 조직을 말하는 것이다.

이 조직은 업무의 공유를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조직 및 하부 조직 단위로 분산된 공통 업무들, 인사업무, 회계 및 채무업무, 정보시스템 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등을 하나의 사업 단위에 집결하여 핵심 비즈니스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 조직은 각 부처 및 하부 조직과 고객 관계를 형성한다.

McKinsey외(2004 ; 홍길표 외 2014, 36)의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유서비스센터와 같은 조직의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제안했다. 지리적 절감 효과(Geographic Saving), 규모의 이익 효과(Scale Benefit),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효과(Process Reengineering) 등이다.

첫째, 지리적 절감 효과(Geographic Saving)는 위치의 경제효과(Economies of Location)로서 임대료, 인건비, 세금 등을 보다 싼 값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의미한다.

둘째, 규모의 이익효과(Scale Benefit)는 시스템 플랫폼, 관리구조, 인력 활용의 최적화, 생산성 향상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셋째,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효과(Process Reengineering)는 프로세스의 단순화 및 자동화, 불필요한 프로세스 및 병목구간 제거 등으로부터 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2. 영국의 공공부문에서의 공유서비스(Shared Services) 활용

행정업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에서 공유의 개념이 적용되는 상황은 영국에서 읽을 수 있다. 행정 내부고객을 대상으로 공직자 간의 공유는 행정업무이고, 외부고객인 지역주민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라 인식하는 경향이다. 영국의 공유서비스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선도 사례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공공분야 공유서비스의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NAO, 2007 ; 홍길표 외, 2014, 37).

첫째, 여러 조직 속에 서비스 전달에 주력하는 조직(Distinct Governance)의 구비, 둘째, 표준화된 과정의 구비, 셋째, 독자적으로 행해지던 활동에 대한 프로세스의 집중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 확보, 넷째, 명확한 성과지표 점검 및 구체적 서비스 조건 실현에 주목하는 고객지향성, 다섯째, 효율성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동시에 기하기 위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 노력 등이다.

영국의 경우에 공공부문에 공유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의 기대효과는 첫째, 규모의 경제 효과 및 단순화·표준화에 따른 효율성 향상에 기초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시설이나 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해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셋째, 신뢰성·풍부성·일관성을 지닌 정보와 자료의 산출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넷째, 상향 조정된 성과기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전문성에 기초한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권고사항이 있다. 이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성함에 참고하여서 할 것이다. 첫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담당 공유서비스센터 등에 공유서비스 전략과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공유서비스 센터 등은 독립적 업무부서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이익을 달성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객기관들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유서비스로 인한 이익과 비용을 분명히 정의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계획의 중심에 공유서비스센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 체계를 구체화하는 데에 긍정적이다.

둘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수립 초기에는 복수의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원거점체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셋째, 비용 절감이나 공공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성과기준으로 초점 맞추기보다는 공유서비스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더 좋은 서비스를 통한 만족도 증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정부 내에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공직 관행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작업이 반드시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3. 서울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서울시는 2012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0호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를 타법개정을 통해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조례 중 대표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조 중요개념에 대한 정의 부분과 그에 대해 분석하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보를 위시하여 공간이라는 물리적 대상과 경험이라는 암묵적 지식까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단체 또는 법인을 칭한다. 서울시의 경우는 이 조례에서는 비영리단체까지를 인정하고 있다. 영리에 대한 공유의 영역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다.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둘째, 제5조 시장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제안하는 공유촉진 정책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나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촉진을 위한 인식확산
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항목에서 조사, 연구, 계획수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지방행정에서 조례에 구체적 언급이 없는 경우 보조를 자제하는 상황이고 볼 때 조사, 연구, 계획수립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9조 보조금 지원 관련 내용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구 단위의 사업에 중복을 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촉진 조례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르도록 엄격함을 지향하고 있다. 이때 엄격함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이 공유의 활성화를 억제하기보다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케인즈의 ‘팔길이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적 맥락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10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내용과 분석은 다음과 같다.

시장은 공유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신용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공유를 위한 근거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제11조 제12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상과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로 하고 있다. 부위원장은 혁신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사회혁신담당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에서는 전문직이 투입되는 사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기능부분에서도 일반적인 애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

2. 공유단체, 공유기업, 자치구 지원에 관한 심의

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

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6.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거버넌스 체계 내에서의 위원회의 역할이기보다는 서울시의 업무를 위한 스텝으로서의 위원회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우리나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사례분석

1. 우리나라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공유 사례분석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관련 빅데이터 공유는 다음의 <표4-1>에서와 같이 중앙 혹은 중앙정부의 투자기관이나 지방정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관련 빅데이터의 공유는 어느 한 기관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각 주체별 다른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중앙정부의 빅데이터 공유와 지방정부의 경우 서울시를 대표사례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표 4-1> 우리나라 교통관련 빅데이터 공유 현황

구분	자료종류	제공DB(파일)	DB형식				자료출처	
			항목	수집지역	수집주기	주체		
국토교통부	교통량	지점별 교통량 (EXCEL)	상시 조사 지점, 방향별 교통량, 시간대, 차종구분	전국(고속국도, 일반국도)	AVC 장비를 사용하여 365일, 1일 24시간 동안 연속조사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교통량 정보제공시스템 (www.road.re.kr)	
			수시 조사 지점, 방향별 교통량, 시간대, 차종구분	전국(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고속국도	매년 10월 3째주 목요일(07:00 ~ 익일 07:00)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반국도	연1회 조사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매년 10월 셋째주 목요일(07:00 ~ 익일 07:00)		해당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
심의실적	교통영향평가 실적 (화면 영상 출력)	사업명, 사업대상지, 심의종류, 평가대행자명, 사업시행자, 사업개요 등	전국	각 교통영향평가 대행업체가 과업 완료시 해당 교통영향평가 관련 D/B자료를 정보지원시스템 사이트에 업로드	전국의 교통영향평가업체 및 교통영향평가 협회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tia.molit.go.kr/main.do)		
서울특별시	교통량	교통량 (EXCEL, PDF)	서울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 교통량	서울 주요 간선도로 및 도시고속도로	1년 365일, 24시간(00~24시)	TOPIS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관련기관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https://topis.seoul.go.kr/)	
	심의실적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통보서 (HWP)	사업명, 심의종류, 평가대행자명, 심의위원회명, 사업시행자	서울시 전 지역	2주(10~15일)	서울시청 교통정책과	서울시청 (www.seoul.go.kr)	
	대중교통(지점별)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TOPIS) (화면 영상)	노선번호, 도착예정시간, 현재위치, 방향	서울시 전 지역	실시간	TOPIS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교통관련기관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 메인 홈페이지 - 버	

		상 출력)					스 지도 (https://topis.seoul.go.kr/)
	대중교통 (노선별)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TOPIS) - 전체 노선현황 (EXCEL)	노선번호, 기·종점, 배 차간격, 운 수사 등	서울시 전 지역	매 달	TOPIS 서울지방경 찰청 한국도로공 사 등 교통관련기 관	서울특별 시 교통정 보센터 - 대중교통 정보 (https://topis.seoul.go.kr/)

주) AVC : 자동 차종분류 조사 장비(Automatic Vehicle Classification)로 교통량과 차종분류 조사를 자동으로 실시하는 상시 차종 분류 조사 장비임.

가. 제도적 측면의 특징

정보의 경우는 공개와 공유로 이원화해서 살펴볼 수 있다.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공유의 경우 2018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유를 경제행위의 하나로 합법성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법으로써 공유행정에 관한 규정은 갖추지 못한 상태여서 정보 공개정보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교통정보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5930호로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나. 조직적 측면의 특징

교통정보의 경우 국토부와 관련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료를 제공받는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교통영향평가 자료 같은 경우는 민간부문인 교통영향평가 업체 및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취합하고 공유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제공하는 형태이다.

다. 인력적 측면의 특징

교통부문의 공유관련 인력적 측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등의 정부 투자기관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스템에 의해 수집함으로써 기계장비에 대한 인력을 갖춘 경우가 있다. 셋째, 민간부문의 영향평가 업체나 협회 등에서는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하여 관리하게 된다.

라. 예산 측면의 특징

예산 측면도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앙이나 정부가 출연한 투자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일반회계 중 일부분이 들어가면서 특별회계나 책임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이고, 둘째, 전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담당하는 경우이다. 도리관리부서에서 담당할 경우는 이 일반회계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마. 성공 요인

성공 요인으로는 첫째, 교통에 대한 데이터 공유의 사회적 수요가 커서 체계가 이미 잡혀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합, 통일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민간정보들이 민간대 민간, 민간대 정부 간 수요가 많아서 서로의 협력이 내재하여있어야 하는 분위기가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바.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

본 분석에 얻은 함의로서는 첫째, 데이터 형식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통일성은 물론 질적인 항목과 양적인 항목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각각의 자료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메타 데이터를 사전에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므로 데이터의 체계화,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즉 각각의 데이터를 유형화하고,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데이터 항목의 개념과 정의, 출처, 수집 주기, 수집 주체 등을 데이터 소개에 우리나라의 표준화 방식으로 제시해주는 것이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지만 디지털화하지 않은 자료는 공유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데이터 디지털화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고, 디지털화해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민간부문의 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만들기와 정부가 민간정보를 활용할 때는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적정하고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서로의 정보에 대해서 사전 협력메카니즘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 농기계의 공유 사례분석

농기계의 공유는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제주도 농기계의 공유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대여은행을 시작으로 2010년 서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 신설, 2011년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 신설, 2019년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설 등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공유경제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수놓음 정신에 입각한 농기계의 공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농기계의 공유는 농업인구 감소와 농업인 고령화 등 농업 인적자원 부족 해결을 위한 정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농업 분야의 기계화율을 높여 적기 영농실천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농촌 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가. 제도적 측면의 특징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농기계대여은행을 시작으로,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농기

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변경 시에 임대사업장의 명칭 역시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 중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기계 공유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임대용 농업기계 최상성능 유지를 위한 상시 점검, 임대농업인 안전 운행 교육을 통한 안전 영농기반 조성, 안전 보험 의무화 및 임대 장비 보험 가입으로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 등 농기계 공유에 대한 정책이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의 근거는 제3조의 ①항과 ②항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2 >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2078호, 2018. 7. 13.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임대사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 자치도”라 한다)가 농업인 및 농작업 대행조직(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소속 각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2.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
3. 농기계 임대에 따른 사용자 교육

③ 도지사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조직적 측면의 특징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농업정책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농기계의 공유기반의 근거를 만들었다. 농기계 공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서로 연관된 사업으로서 농기계 임대를 통한 농기계 공유가 진행되며 주요부서는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농기계 공유사업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총괄하며, 제주농업기술원을 통해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편성되어 있다.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신청접수와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임대 대상은 도내 농업인(안전 공제 또는 상해 보험 가입), 농작업 대행 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일반사업자 형태의 농업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인 안전 또는 상해 보험에 가입된 자, 트랙터, 농용굴삭기 경우 농기계 교육 이수자 또는 자격증 보유자가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다. 인력적 측면의 특징

중앙과 지방정부, 제주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 등에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있으나 공유활동에 대한 지원과 감독, 교육만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기계의 공유는 기계 기구의 사용과 용도에 따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이 있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전문교육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 부분에서도 공유활동 관련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기계 관리와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담당해줄 전문인력 배치가 주요 관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라. 예산 측면의 특징

농기계의 공유는 제주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농기계 임대를 위해 책정된 임대료는 농가소득과 농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해 관리비 정도의 비용이 책정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농기계의 임대 시점부터 예산지원이 시작되도록 하여 농가에서는 부담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임대 참여가 가능하도록 농가에게 보편적 혜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그 임대료의 수준이 민간 대 민간의 경우에서 부담하는 액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작고, 현실적 유지비 수준에서의 임대료여서 임대형식을 띤 농기계 공유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결과, 제주도 내 1083 농가가 1,324대의 임대 농기계를 임대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92 농가가 1,107대를 임대했던 것과 비교해 각각 22%, 20% 증가하였다고 한다.³⁾ 이런 상황은 제주도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공유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임대 가능한 농기계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마. 성공 요인

제주지역의 농기계 공유사업의 성공 요인으로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3) 이 내용은 사례분석 과정에서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의 담당 중 한 분과의 인터뷰에서 파악한 내용이다. 2022년 11월 29일, 농업기술원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의 인터뷰이다.

첫째, 농기계 관련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기계 공유를 위한 임대사업을 농업 분야의 특화된 농업기술원이 관리감독하고, 전문성을 갖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의 임대와 반납 등 업무가 쉽고 편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든 제도가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농기계 임대 관련 임대료와 농가의 임대 관련 비용의 적정성이다. 농기계 임대를 위해 책정된 임대료는 농가소득과 농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해 농가가 농기계를 임대한 시점부터 예산지원을 받게 되고, 농업경영 전체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점이 성공 요인이었다 할 수 있다.

셋째, 임대 대상 농기계의 상시 관리와 사용 농가에 대한 교육활동의 적절성이다. 담당 기관의 관리 측면에서는 임대용 농업기계 최상성능 유지를 위한 상시 점검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교육 측면에서는 임대농업인 안전 운행 교육을 통한 안전 영농기반 조성하고, 안전 보험 의무화 및 임대 장비 보험 가입으로 인적, 물적 피해 최소화는 등 안전과 교육을 중점 운영 방향으로 진행한 점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농기계 임대사업이 추가적 외부효과로 농가에게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여 그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의 공유가 외부효과를 발휘하여 정보, 농업에 대한 기술, 농기계의 성능 및 효율성 등의 효과를 공유하게 되었고, 일반 농가들이 경쟁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공유에 대한 동기부여가 보태어져 공유 기반 구축이 쉽게 되었다는 점이다.

바.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

농기계 공유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두고 있으며, 제주시는 애월읍 상귀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봉개동, 조천읍 등 제주시 동부지역 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농기계 공유의 지속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기계 기구의 사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므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기계 사용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기적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농기계 공유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으로 소형 파쇄기는 물론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기계 임대도 가능하도록 농기계의 확충이 필요하다.

넷째, 관리조직인 제주농업기술원에 공유 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상시 상담 요청에 대응케 하거나 사전에 교육 등을 담당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주농업기술센터 농기계 교육장



공유 농기계

<그림 4-1> 농기계 공유현황

3. 양조장 제조설비 및 공동물류창고의 공유 사례분석

양조장 제조설비 및 공동물류창고의 공유 사례는 2022년 현재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 J라는 양조장을 중심으로 한, 「제주 술 생산자협동조합」 내에서 진행 중인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총 8개 회사가 참여하여 회원으로 활동하며, 양조장 제조설비와 공동물류창고의 공유 등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실제 집행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상황이다. 양조장 제조설비는 이미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동물류창고는 추진하고 있다.

업체 간의 각종 설비, 창고, 실험장비 등에 대한 공유수요가 있었으나 중앙정부가 2017년부터 전통주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승인했고, 전통주에 한해서 2021

년 1월부터 공유의 형태인 OEM 방식 생산이 허용되면서 제주도에서도 이 분야의 공유활동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그 시점에서 주류면허 관련 법이 개정되고, 공유행위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제주도 J 농업회사법인도 조합을 통해서 공유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가. 제도적 측면의 특징

본 공유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국세청 규제, 기획재정부가 관련한 사업이다. 그 법률적 근거인 양조장 제조설비, 공동물류창고, 실험장비의 공유가 가능하게 된 제도적 측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4-3>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주류 제조면허)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류 제조위탁 신고)
 - 전통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의 주류제조 허용(2021.1.1. 기획재정부)
- * 소규모 양조장의 지속적인 요구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고가의 생산설비와 연구장비의 공유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

나. 조직적 측면의 특징

중앙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양조 제조설비에 관한 공유의 기반을 만들었다. 농림부, 국세청, 기획재정부가 서로 연관된 사업으로써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협력하는 체계이다. 주요부서는 국세청 주류지원면허센터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 말고, 농림축산식품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실무는 지방정부의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된다. 양조장 제조설비 및 공동물류창고 공유사업의 경우 신청접수와 보조금 집행은 제주시청 농정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민간의 경우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일반사업자 형태의 개인 회사에서 받을 자격을 갖게 된다.

다. 인력적 측면의 특징

중앙과 지방정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 센터 등에 일반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있으나 공유활동에 대한 지원과 감독, 교육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 부분에서도 공유활동 관련 전문인력을 두고 있지는 못하다.

제주지역의 경우 양조장 관련 공유뿐 아니라 마을만들기나 마을 공동목장 등의 시설들에 대한 공유를 담당하는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라. 예산 측면의 특징

한 개인이 설비나 창고를 위한 보조금을 받는 경우와 조합이 받아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유하는 트랙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예산배정, 지방정부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심사 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다. 결국 제주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 및 관리 감독하는 최종 주체가 된 상황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제주지역 J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협동조합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J 법인을 중심으로 조합의 회원 범위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다.

마. 성공 요인

성공 요인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을 어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협동조합에게 주고, 관리의 주체를 법인격을 가진 주체에게 할당한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해당 양조사업에 대한 정부의 온라인 판매허용과 더불어 욕구가 증가했고, 그 욕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경비의 절감을 위한 설비의 공유에 설득력이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양조 기술이 활성화되기 전인 단계이며, 공유에 대한 기반이 형성되기 전 조합 단위에서 앞섰던 점이 성공 요인이었다 할 수 있다.

넷째, 설비의 공유가 외부효과를 발휘하여 정보, 기술, 홍보 등의 효과를 서로 공유하게 되어, 각 주체들의 경쟁력을 높이게 됨으로써 공유에 대한 동기부여가 보태어져 공유기반구축이 쉽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공동물류창고처럼 개인에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의 경우 공유욕구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호응이 커서 현재 추진 중인 공동물류창고 공유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위와 같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요소에 공유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것이 공유의 성공 요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바.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

양조장 설비 및 창고, 실험장비 공유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의 이점에 대한 교육, 공유의 성공사례에 대한 참관 등의 사전교육이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둘째, 공유효과는 참여하는 수에 비례한다고 보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 외부효과로서 홍보 효과 등이 만들어지게 하고, 그 효과가 있음을 관련 업체들에 알리도록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셋째, 중간조직에서 공유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상시 상담 요청에 대응케 하거나 사전에 교육 등을 담당케 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공유시설을 관리하는 하나의 법인에는 그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유사업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양조장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64
 <그림 4-2> 양조장 제조설비 공유현황

4. 마을만들기사업 설비공유 사례분석 :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의 설비공유는 농식품부가 추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중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소재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인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어촌의 다양한 향토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생산·가공·서비스 분야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 동부지역 농어촌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

블랙푸드육성사업은 거문오름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검은쌀, 검은콩, 오디 등 흑색 농산물을 가공하는 검은색 식품 복합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오메기떡, 오디와인 등 블랙푸드 제품개발, 가공시설 및 홍보관 구축,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은 주변 지역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산품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업이다. 마을의 브랜드를 만들고, 지역 주민이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 유통, 홍보·마케팅에 직접적으로 참여도 한다. 생산설비의 공유를 통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가. 제도적 측면의 특징

마을공동체가 참여한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 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만든 사업이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예비사업자로 지정된다. 12개월 동안 전문가그룹을 통해 사업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 현장 컨설팅을 마친 후에 사업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그 사업자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업의 진행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4-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8812호, 2022. 2. 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제16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시책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서비스 적정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2. 지역 간 생활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 생활서비스 여건 개선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5. 청년 창업 및 정착 지원 등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자립기반 조성 등 공동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민의 자율적인 교육 및 훈련 지원, 마을·공동체 전문가 양성 등 주민 및 지역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8. 자치단체 간 시설 및 인력 공동 활용, 행정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본조신설 2020. 12.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제목개정 2015. 6. 22.]

나. 조직적 측면의 특징

본 사업은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역의 성장 동력을 위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관련 지역 사업자들의 제조설비와 커뮤니티 공간, 교육프로그램 등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관리하며 지방정부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업무를 맡고, 제주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국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다.

사업은 주로 지방정부의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되 실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다만 제주지역의 경우는 행정시인 제주시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신청접수와 보조금 집행은 제주시청 농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시장·군수·구청장, 그 외 연구단체 등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도록 하고 있다.

다. 인력적 측면의 특징

본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는 관련 전문인력이 배정되고 있고,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성공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뿐 아니라 전문가그룹을 만들어 실제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컨설팅할 수 있는 인력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다.

추가로 중앙정부의 경우, 공유활동에 대한 지원과 감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민간 부분에서도 공유활동 관련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공공기관과 그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법인에서도 향토산업 육성사업관련 공유뿐 아니라 마을만들기나 마을 공동목장 등의 시설들에 대한 공유를 담당하는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공유 담당 인력이 갖추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라. 예산 측면의 특징

본 향토산업육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사업자 자부담 20% 이상), 지원 한도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 등 50%)을 4년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예산을 배정하고, 지방정부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게 된다. 심사 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다. 결국 제주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 및 관리 감독하는 최종 주체가 된 상황이다. 이러한 절

차를 통해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단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보조금을 받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마. 성공 요인

본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 성공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을 어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 형태를 띤 마을기업에게 주고, 관리의 주체를 법인격을 가진 주체에게 할당했다는 점이다.

둘째, 사업자선정과정에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참여 농가 교육,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자문단 운영, 사업단 운영, 사업단 전담 인력 비용, 사업단 경영, R&D, 홍보마케팅 중간 및 완료 평가, 브랜드 개발 및 관리, 현 장애로 기술지원, 상품 개발 등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충분한 사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매뉴얼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인 유네스코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과 연계하여 ‘생태관광’과 ‘흑색 농산물’관련 모티브의 융복합을 이루어낸 점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 학계와의 연계 활동이 적신했다는 점이다. 거문오름 블랙푸드 육성사업단과 제주대학교 LINC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환한 점이 성공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6차산업 관련 제조시설에 커뮤니티 공간(까망꼬띠)을 만들고 본 시설을 마을의 중심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바. 추가로 고려해야 할 요소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참여 농민들의 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을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공유의 이점에 대한 교육, 공유의 성공 사례에 대한 참관 등 구성원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역량 강화교육이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둘째, 관련 중간조직 내에 공유관련 인력을 채용하고, 상시 상담 요청에 대응케 하거나 사전에 교육 등을 담당케 해주면 바람직하겠다는 점이다.

셋째, 공유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공유사업이 마을의 화합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블랙푸드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오디로 생산된 와인

<그림 4-3> 마을만들기사업 공유현황

제3절 사례분석을 통한 공유요소 도출

사례분석을 통해 공유요소를 도출하였다. 공통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각 부문 공유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공유서비스 센터에서는 각기 수행하던 공통된 업무나 서비스 통합 통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공유서비스를 통해 지리적 절감, 규모의 경제,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효과 등 유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국의 공유서비스 활용사례에서는 공공부문의 독립적 업무부서로 조성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사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과의 공유를 위한 거버넌스적 공유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케 했다.

넷째, 우리나라 교통 데이터 공유 사례에서는 민간정보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만들기과 공유체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다.

다섯째, 농기계 임대 사례에서는 정부부문이 지원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공유 관련 전문 인력 배치의 중요성 인식과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거리, 즉 접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상시 교육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능케 했다.

여섯째, 양조장 제조설비 및 공동물류창고의 공유 사례분석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 등에 주는 보조금 방식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케 해주었다. 공유의 주체 역할을 하는 민간부문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하다는 점도 읽을 수 있었다.

일곱째,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 통한 마을만들기 사례분석에서는 공유사업이 지역의 자산이나 유산 등과 연결할 때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교훈해주었다. 해당 사업의 지역의 공공부문, 특히 교육기관(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연결할 경우의 이점이 있음을 인식케 해주었다.

제5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DHP 분석

제1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중요 요소 분석

1. 요소 도출을 위한 델파이 분석

1) 델파이 1라운드 설문조사 결과분석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1라운드의 설문지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8명으로부터 답신을 받아서 1라운드의 결과를 정리하였다. 3번 문항은 2라운드에서 연결하여 제안할 것은 아니므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정리하는 것에 그쳤다.

<표 5-1>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1라운드 DHP 조사내용

<p>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전문가(델파이)조사 (1단계)</p>
<p>안녕하십니까?</p> <p>저 박중명은 이번 박사논문을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 관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논문 주제가 현장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의 내용이어서 선생님들의 고견이 매우 중요합니다.</p> <p>다음 질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히 주관적 의견도 좋습니다.</p> <p>참고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란? 첫째, 행정 부문 내에서 정보와 공간, 조직, 인력 등의 공유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행정과 민간부문의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셋째, 민간부문 간의 공유활동을 행정 부분이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p>
<p>1. 이러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p> <p>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3. 제주지역의 이러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가 기존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논문청구자 박종명 : 010 7113 1950
지도교수 황경수 : 010 3697 5912
수신 이메일 : korea9400@naver.com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제1트랙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 동인에 관한 질문이다. 공유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이다.

- 행정서비스의 수준의 우위 확보
- 비용측면(예산)에서의 우위 확보
- 서비스 공간적 접근성 용이
- 시간 측면 우위
- 공유가능 시설이나 장비 등 조작성 용이
- 서비스 제공 예측의 용이성 확보
- 행정자원의 효율적 관리
- 서비스 제공의 신속함
- 공공성 확보
- 규모의 경제 확보
- 부서 이기주의와 부서 간 칸막이 제거
- 데이터 통합관리

제2트랙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관한 질문이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이륙을 위한 상위법과 그 권한을 가지는 조례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위한 공직자 사전교육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계획수립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특별회계의 틀 설정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행정서비스 공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 공간의 확보
- 행정서비스 공유 관련 인력풀 구성
- 행정서비스 공유관련 피드백 체계구축
- 행정 분야 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구축
- 행정서비스의 공유로 인한 편의 획득과 사회봉사와의 연결라인 구축
- 행정 분야 내의 공유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행정 분야 내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제3트랙은 기존의 제주지역에서 제공되었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다.

- 읍면 혹은 리단위의 농기계 공유사업
- 통계자료의 공유
- 사회복지 관련 행정공유기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내의 GIS 정보
- 민간부문의 연습실 임대와 악기 임대와 공유
- 제주지역 균형 발전지원센터 강사지원시스템(생활문화 강사 인력 지원사업)
- 제주문화중개소에서 공간공유
-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사업 중
- 사무실 공유와 연결된 위케이션
- 목초 재배 및 수확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사업
- 지방정부 내의 카쉐어링

이 제3트랙의 설문은 제주지역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항목이었고,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참고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을 참고하여 농기계 공유, 공모사업 등 관련한 사례분석을 하였다.

2)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2라운드 설문조사는 1라운드에서 응답한 18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설문은 다음과 같다.

<표 5-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2라운드 DHP 조사내용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조사
(2단계)

안녕하십니까? 여러 전문가님께서 델파이 1라운드 조사에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2단계 조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처럼 정리된 내용에 추가할 요소가 있으면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논문청구자 박종명 : 010 7113 1950
지도교수 황경수 : 010 3697 5912
수신 이메일 : korea9400@naver.com

1. 다음은 공유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추가해주시시오.

- 행정서비스의 수준의 우위 확보
- 비용측면(예산)에서의 우위 확보
- 서비스 공간적 접근성 용이
- 시간 측면 우위
- 공유가능 시설이나 장비 등 조작성 용이
- 서비스 제공 예측의 용이성 확보
- 행정자원의 효율적 관리
- 서비스 제공의 신속함
- 공공성 확보
- 규모의 경제 확보
- 부서이기주의와 부서간 칸막이 제거
- 데이터 통합관리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 :)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을 적어주시시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국 단위의 조직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이룩을 위한 상위법과 그 권한을 가지는 조례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위한 공직자 사전교육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방정부의 계획수립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특별회계의 틀 설정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행정서비스 공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 공간의 확보
 - 행정서비스 공유 관련 인력풀 구성
 - 행정서비스 공유관련 피드백 체계구축
 - 행정파트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구축
 - 행정서비스의 공유로 인한 편의 획득과 사회봉사와의 연결라인 구축
 - 행정 분야 내의 공유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행정 분야 내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 :)
- ※ 2라운드까지 도와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답신해주시면 됩니다.

2라운드에서 추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 항목, 즉 공유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항목의 추가 답변 사항이 다.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 제고를 위해서

- 공동체 화합 정신의 증진,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
- 공유지의 비극 극복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 행정서비스의 시의성 확보
- 사회봉사 연결라인 구축
- 빅데이터 공유의 이점 제고

기타사항으로 2라운드 설문지 중 ‘규모의 경제’라는 항목을 행정비용 절감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제안을 한 경우가 있었다.

2번 항목,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소의 추가내용이다.

- 공공부문에 해당 관리 부서 신설
-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채용
-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교육
- 해외사례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유할 수 있는 자산 확보 노력
-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관, 민-관 간 홍보 채널 마련
- 개인정보유출 사전 예방 보안장치 마련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선정을 위한 AHP 조사 분석

2회에 걸쳐 실시한 델파이조사에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제도와 관련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이룩을 위한 상위법과 그 권한을 가지는 조례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계획수립
- 행정서비스 공유관련 피드백 체계구축
- 해외사례 제도관련 분석
- 개인정보유출 사전 예방 보안장치 마련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조직과 관련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
-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행정파트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구축
- 행정파트내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관, 민-관 간 홍보 채널 마련
- 행정서비스의 공유를 위한 사회봉사와의 연결라인 구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인력과 관련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채용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위한 공직자 사전교육
- 행정서비스 공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 공간의 확보
- 행정파트내의 공유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예산과 관련된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특별회계의 틀 설정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공유할 수 있는 자산 확보 노력

3. AHP를 통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우선순위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대상은 관련 학계 교수, 정부 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 공공연구소의 석·박사, 민간기업의 박사들로 28명을 선정하여 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약 9일간 실시하였다.

영역별 대항목과 세부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그림과 같다.

AHP 설문조사 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델파이조사 결과 예산 부문의 항목이 세 가지만이 제안이되 AHP 설문지의 전반적 중요도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소분류의 항목의 균형을 위해 두 개의 설문을 추가하였다. 두 개의 추가내용은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한 내용에서 연결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하였다. 그 추가내용 항목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진 조례에 공유기반 거버넌스 참여 단체들을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열거.

○ 공유기반 담당 제3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제3기구, 센터 등에 지방예산 투입하여 위탁 가능 체계구축이다.

AHP 설문을 구성할 때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라는 표현은 설문을 구성하여 사전 예비조사(Pilot Survey) 조사과정에서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AHP 설문에서는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이라는 표현으로 사물화하여 표현하였다.

또 다른 항목 ‘행정서비스 공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 공간의 확보’이란 내용이 ‘행정서비스 공유에 관련 소통전문가 양성 교육’으로 바뀐 것도 같은 사유 때문이다. 이때 본 연구에서 소통 공간이라 하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기제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에 따른 소통전문가 양성 교육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그 소통전문가들이 관련 주체들 간의 소통을 담당하도록 하는 차원으로 표현을 전환한 것이다.

<표 5-3> AHP 설문 내용 체계도

구분	대항목 (4)	세부 항목(20)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소	제도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의 계획수립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조례 신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 보안장치 마련
		행정서비스 공유관련 피드백 체계를 통한 DB 구축
		국내·외 제도 관련 사례분석과 비교한 모니터링
	조직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
		행정 분야 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기획단 구축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관, 민-관 간 홍보 채널 구축
		지역 사회봉사 단체들과 행정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인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업의 지원을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채용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위한 공직자 사전교육
		행정서비스 공유에 관련 소통전문가 양성 교육
		행정 분야 내의 공유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예산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특별회계의 틀 설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의 경우 공유할 수 있는 자산 확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진 조례에 공유기반 거버넌스 참여 단체들을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열거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제3기구, 센터 등에 지방 예산 투입하여 위탁 가능 체계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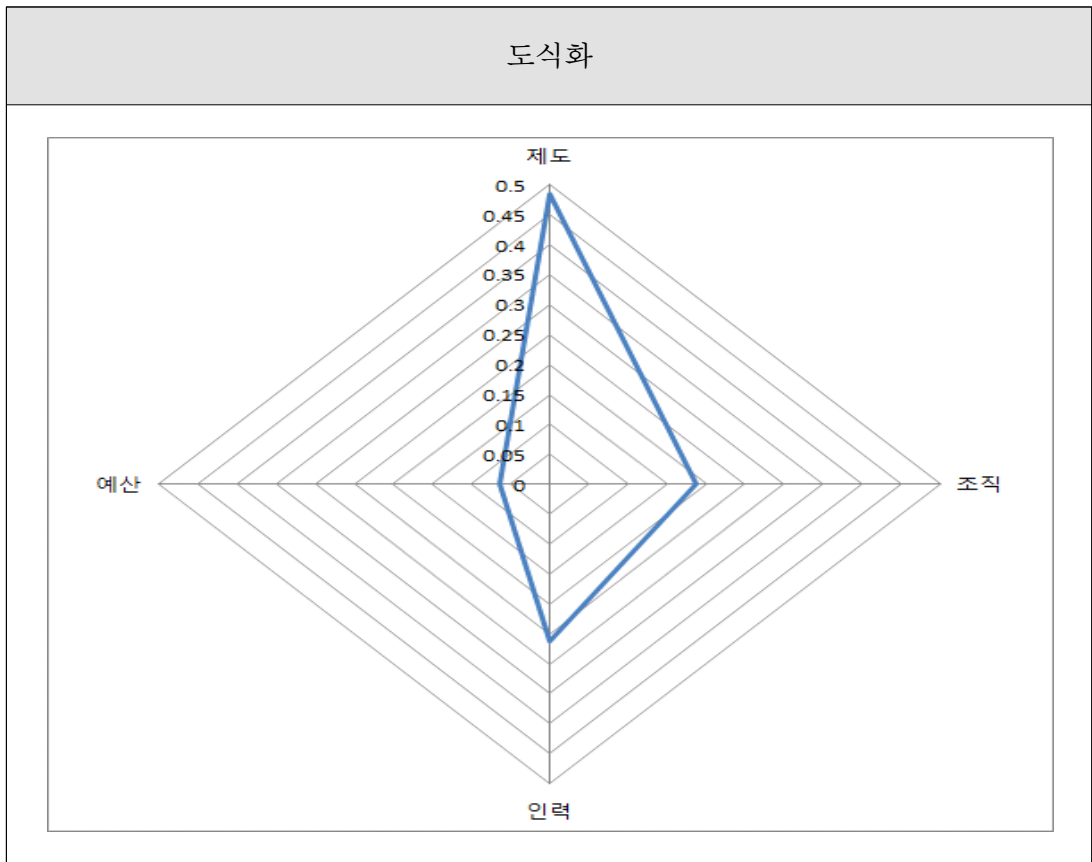
1) 주요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분석결과(1단계 분석)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4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4개 영역의 지표는 제도, 조직, 인력, 예산으로 구성하였으며, 4가지 영역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1단계 상위지표 4개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제도’(0.485)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 중 ‘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인력’(0.262)으로 나타났으며, 1순위인 제도와 상대적 중요도는 큰 차이를 보였다. 3순위로는 ‘조직’으로 분석되었고(0.188), 4개 영역 중 ‘예산’(0.065) 영역이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 1단계 4개 부문 중요도 분석결과

구분	중요도	순위
제도	0.485	1
조직	0.188	3
인력	0.262	2
예산	0.065	4
일관성 지수(C.I.)=0.044)		



<그림 5-1> 1단계 4개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4) 일관성 지수 CI(Consistency Index)는 해당 쌍대비교 행렬이 일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관성 비율이 10% 이내일 경우 일관성이 있다고 규정함(조근태 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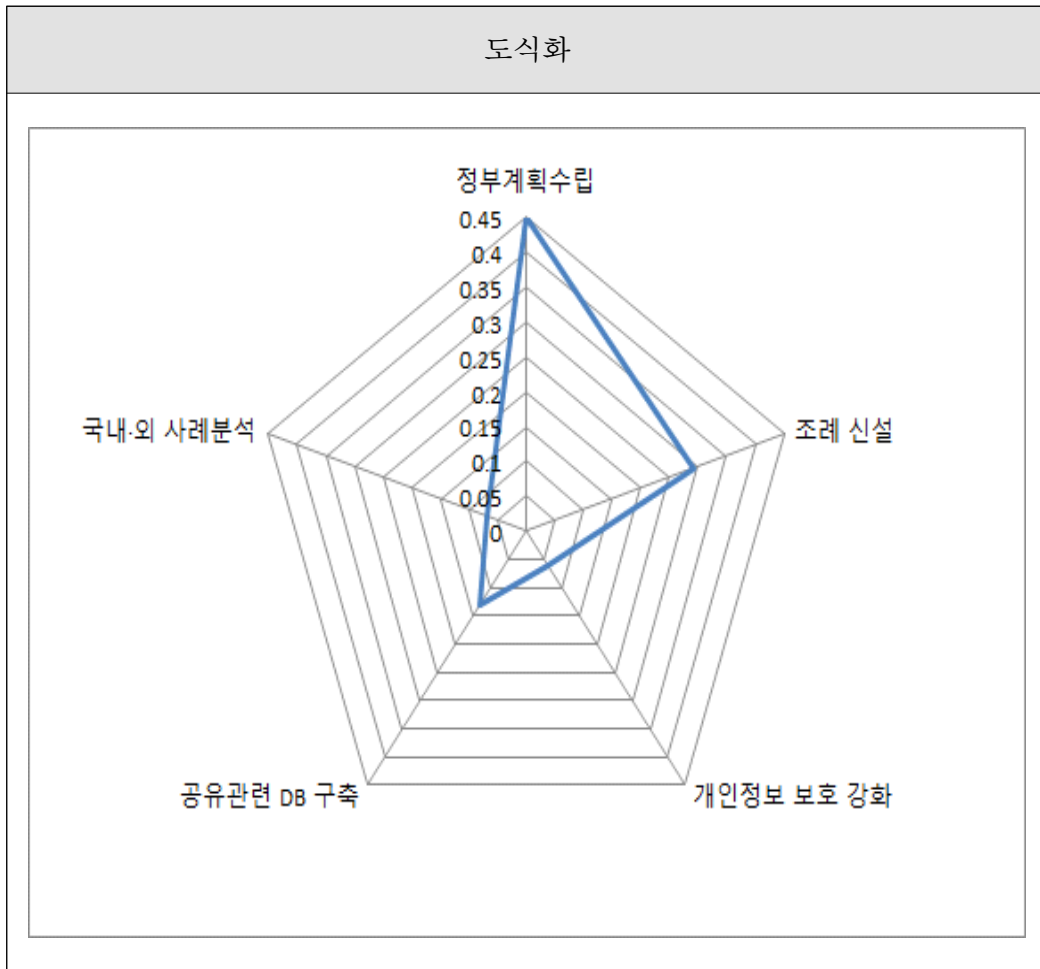
2) 주요 요소에 대한 하위영역 우선순위 분석결과(2단계 분석)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와 관련하여 상의 4개 부문에 대한 하위지표로서 총 20개의 하위지표를 설정하였다. 각 세부 하위영역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영역의 세부지표 분석결과 ‘정부계획 수립(0.450)’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조례 신설(0.292)’이 2순위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공유관련 DB 구축(0.131)’으로 1순위, 2순위와 중요도 차이가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런 분석을 통해,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 중 ‘제도’부분에서는 정부계획수립과, 조례 신설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사례분석(0.067)’, ‘개인정보 보호 강화(0.0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2단계 제도 부문 중요도 분석 결과

대항목	1단계 중요도	세부항목	2단계 중요도	순위
제도 (C.I=0.03)	0.485	지방정부계획수립	0.450	1
		조례 신설	0.292	2
		개인정보 보호 강화	0.061	5
		공유관련 DB 구축	0.131	3
		국내·외 사례분석	0.06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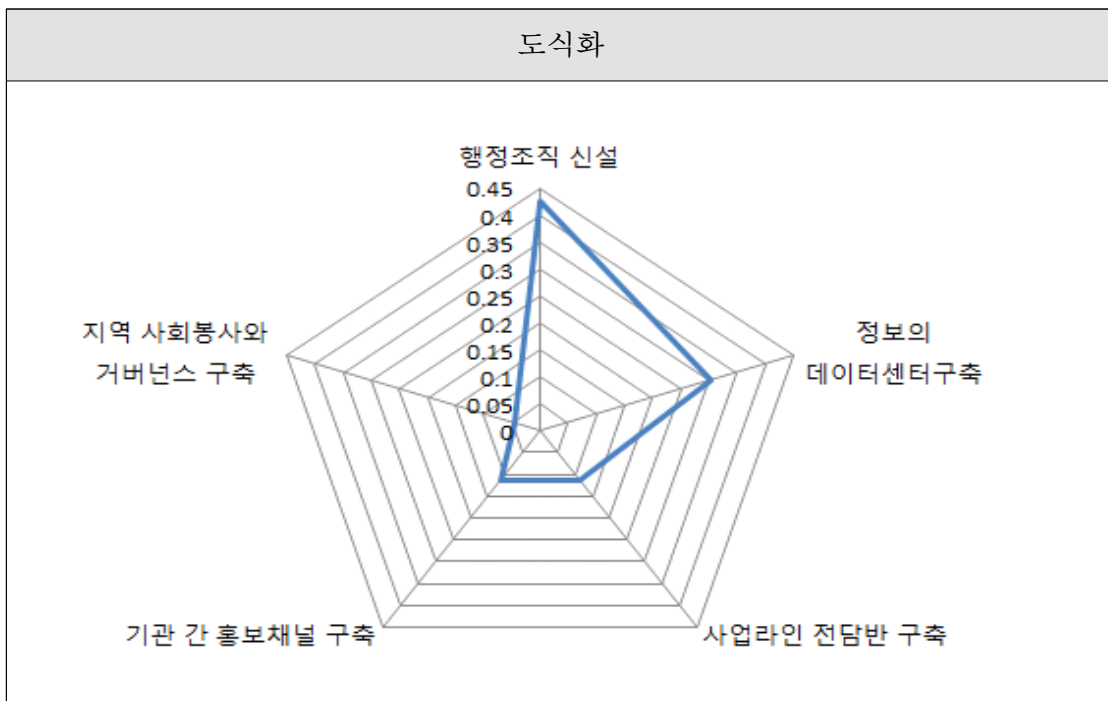


<그림 5-2> 2단계 제도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둘째 ‘조직’ 영역의 세부지표 중요도 분석결과 ‘행정조직 신설(0.424)’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0.0.305)’, ‘기관 간 홍보 채널 구축(0.115)’,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0.112)’,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0.044)’순으로 나타났다.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 중 ‘조직’부분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별도의 행정조직 신설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표 5-6> 2단계 조직 부문 중요도 분석결과

대항목	1단계 중요도	세부항목	2단계 중요도	순위
조직 (C.I=0.06)	0.188	행정조직 신설	0.424	1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	0.305	2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0.112	4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0.115	3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0.04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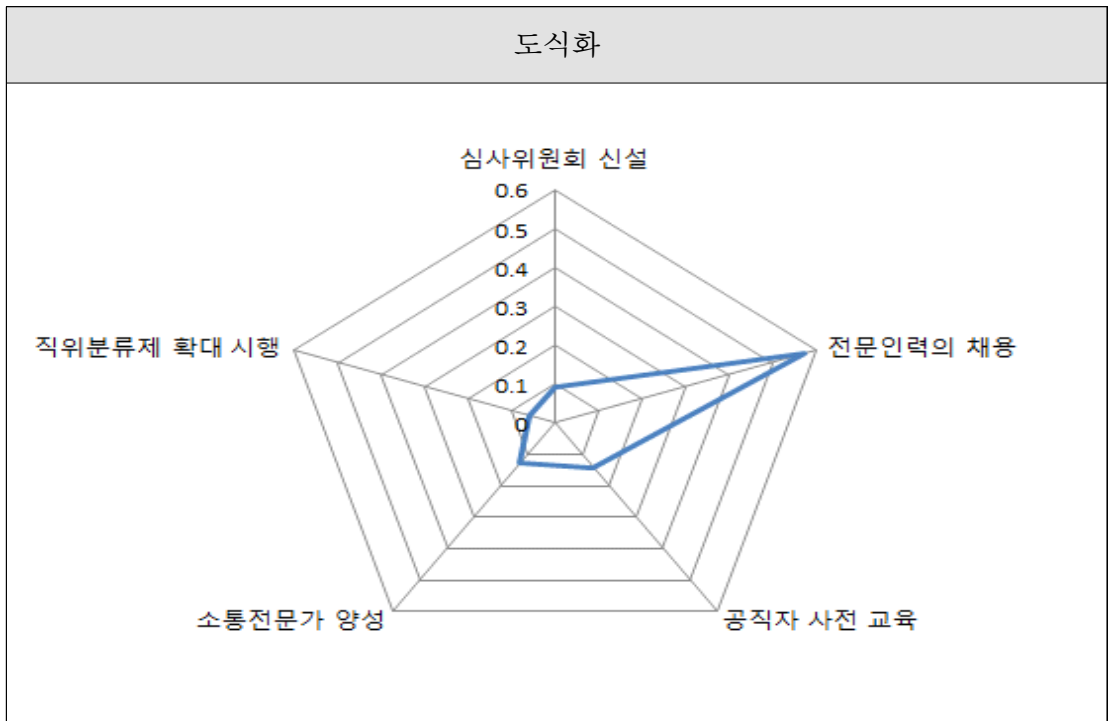


<그림 5-3> 2단계 조직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셋째, ‘인력’ 영역에 대한 분석결과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채용(0.575)’이 가장 높은 중요도로 나타났다. 이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직자 사전교육(0.142)’, ‘소통전문가양성(0.129)’, ‘심사위원회 시설(0.093)’, ‘직위분리제 확대시행(0.06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7> 2단계 인력 부문 중요도 분석결과

대항목	1단계 중요도	세부항목	2단계 중요도	순위
인력 (C.I=0.03)	0.262	심사위원회 신설	0.093	4
		전문인력의 채용	0.575	1
		공직자 사전교육	0.142	2
		소통전문가 양성	0.129	3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0.06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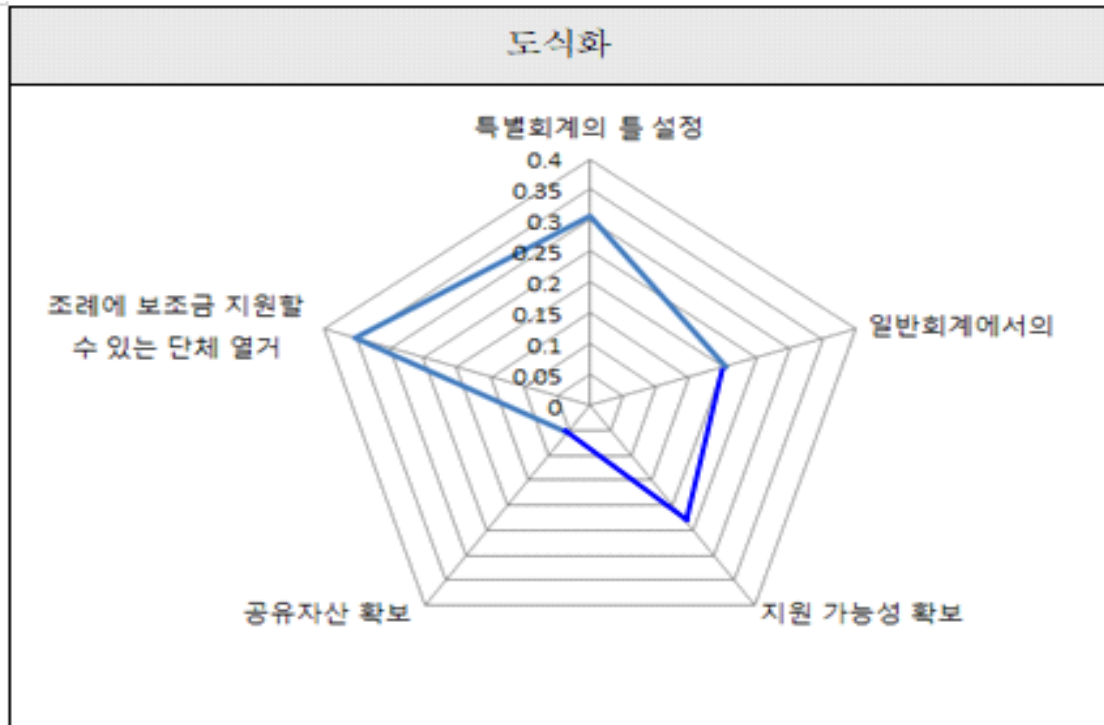
<그림 5-4> 2단계 인력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넷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에 대한 영역의 중요도 분석결과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0.35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틀 설정(0.307)’,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0.204)’,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0.081)’, ‘공유자산 확보(0.055)’ 순으로 분석되었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에 대

한 영역에서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와 특별회계의 틀 설정을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8> 2단계 예산 부문 중요도 분석결과

대항목	1단계 중요도	세부항목	2단계 중요도	순위
예산 (C.I=0.05)	0.065	특별회계의 틀 설정	0.307	2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0.204	3
		공유자산 확보	0.055	5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0.353	1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0.081	4



<그림 5-5> 2단계 예산 부문 중요도 분석 도식화

3) 종합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결과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와 관련하여 우선순위 분석을 위해 대항목과 하위항목에 대한 각각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종합 우선순위 및 상대적 중요도 분석은 1단계에서 쌍대비교를 통해 조사된 가중치를 하위 세부 항목에 적용하여 하위 요인의 전체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것이다. 종합 우선순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합분석 결과 1순위로는 ‘정부계획수립(0.218)’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 채용(0.151)’, ‘조례 신설(0.142)’, ‘행정조직 신설(0.080)’, ‘공유관련 DB 구축(0.06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인 문제점은 ‘공유자산 확보(0.004)’, ‘공유기반 담당 제3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0.005)’,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0.008)’로 주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도 및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때,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요소는 대항목에서 제도와 조직이 중요한 요소로 분석되었고, 하위항목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의 계획수립,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채용,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조례 신설 등 정부의 제도와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이 주요 요소로 분석되었다.

<표 5-9> 1·2단계 통합분석 결과(중요도)

1단계		2단계		전반적 중요도 ⁵⁾	우선 순위
구분	1단계 중요도	구분	2단계 중요도		
제도	0.485	정부계획수립	0.450	0.218	1
		조례 신설	0.292	0.142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0.061	0.030	10
		공유관련 DB 구축	0.131	0.064	5
		국내·외 사례분석	0.067	0.032	9
조직	0.188	행정조직 신설	0.424	0.080	4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	0.305	0.058	6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0.112	0.021	14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0.115	0.022	13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0.044	0.008	18
인력	0.262	심사위원회 신설	0.093	0.024	11
		전문인력의 채용	0.575	0.151	2
		공직자 사전 교육	0.142	0.037	7
		소통전문가 양성	0.129	0.034	8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0.061	0.016	16
예산	0.065	특별회계의 틀 설정	0.307	0.020	15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0.204	0.013	17
		공유자산 확보	0.055	0.004	20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0.353	0.023	12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0.081	0.005	19
일관성 지수(C.I.)=0.04					

제6장 공유기반 모형과 조례 및 정책제언

제1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모형 제안

1. 모형개발을 위한 전제 요소들

1)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도출한 요소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 첫째는 관련 이론을 통해 도출한 요소들이다.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시설공유 관련한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였다.

- 공유경제의 유희자산의 공유
- 공유경제의 정보의 공유
- 정보의 공유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중복투자 방지

공유의 목적과 사회적 맥락 측면의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 공유경제의 불평등 해소
- 공유경제를 통한 자원의 절약, 지속가능발전유도, 사회적 관계 복원 등 공동체
- 관계국가모형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서 정부가 민간과의 네트워크에서 협력을 유도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강조
- 공유가치성장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정부 개념에서는 정부는 사회적 변화를 위한 포용적 성장을 유도해야 하고 상호의존적인 역할 유도
- 다이아몬드이론으로서 국가론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체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5) 전반적 중요도는 1단계 중요도 값과 2단계 중요도 값을 곱하여 20개 하위항목의 가중치(순위)를 구하는 것임

행정영역 공유의 지향적인 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요소들이 다음과 같았다. 크게 다섯 가지였다.

- 공유기반행정서비스 개념에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행정기관 간 유사 기능의 중복성 제거
- 공유기반행정서비스 개념에서는 거버넌스적 접근으로 민간부문과의 협력, 그 결과의 민간으로의 배려 통한 민과 관의 협력 선순환 구조 구축
- 공유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행정과 기업의 사회와의 공유가치 창출
- 공유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뉴거번스적 협력과 조정, 타협과 연결 강조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유형에서는 정부기관업무운영형(COE)으로써 행정업무의 공유, 행정기관 내부고객과 특정 외부고객에서 특별한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정부 공유서비스제공형(GSSP), 민간기업이 공공부문 고객을 대상으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제공형(CSSP), 정부와 민간이 합작방식으로 조직을 설립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행정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협력 파트너십형(PPP)이다.

2) 델파이조사를 통해 도출한 요소들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 들쯤는 1차와 2차 델파이 조사 때에 전문가를 통해서 파악했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항목들이다. 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는

- 공동체 화합 정신의 증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
- 공유지의 비극 극복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
- 사회봉사 연결라인 구축

행정부문 측면에서는

- 행정서비스의 수준의 우위 확보

- 행정서비스의 시의성 확보
- 비용 측면(예산)에서의 우위 확보
- 행정자원의 효율적 관리
- 공공성 확보
- 규모의 경제 확보
- 부서 이기주의와 부서 간 칸막이 제거
- 데이터 통합관리

민간부문이나 서비스 수혜자 부문에서의 전제가 되어야 할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서비스 공간적 접근성 용이
- 시간 측면 우위
- 공유가능 시설이나 장비 등 조작성 용이
- 서비스 제공 예측의 용이성 확보
- 서비스 제공의 신속함
- 빅데이터 공유의 이점 제고

3) AHP 조사를 통해 도출한 요소들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전제 셋째는 전문가 조사 3차시에 시행한 AHP 조사 결과이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도와 조직, 인력, 예산 부문인 대분류에서는 제도, 인력, 조직, 예산 순으로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소분류의 항목 중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이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을 만들 때 참고해야 할 요소이다.

- (1위) 정부계획수립
- (2위) 전문인력의 채용
- (3위) 조례 신설
- (4위) 행정조직 신설

- (5위) 공유관련 DB 구축
- (6위)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
- (7위) 공직자 사전교육
- (8위) 소통전문가 양성
- (9위) 국내외사례분석
- (10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 (11위) 심사위원회 신설
- (12위)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 (13위)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 (14위)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 (15위) 특별회계의 틀 설정
- (16위)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17위)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 (18위)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 (19위)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 (20위) 공유자산 확보

4)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요소들

모형개발을 위한 전제 넷째는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요소들이다. 유사사례를 분석하여 얻은 요소와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공유서비스 센터를 통해서도 각기 수행하던 공통된 업무나 서비스 통합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알 수 있었다. 지리적 절감, 규모의 경제,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효과 등이 유도 가능한 체계였다.

둘째, 영국의 공유서비스 활용분석에서는 공공부문의 독립적 업무부서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서울시 공유축진 조례분석에서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과의 거버넌스적 공유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얻은 전제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교통 데이터 공유 사례분석에서는 민간정보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만들기와 공유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였다.

둘째, 농기계 임대 사례분석에서는 정부부문이 지원과 관리에 관심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이 있었다. 공유 관련 전문 인력 배치의 중요성 인식,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고려할 필요, 상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양조장 제조설비 및 공동물류창고의 공유 사례분석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 등에 주는 보조금 방식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공유의 주체 역할을 하는 민간부문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거문오름 블랙푸드육성사업 통한 마을만들기 사례에서는 공유사업이 지역의 자산이나 유산 등과 연결하는 경우의 성공 가능성 크다는 교훈을 찾을 수 있었다. 해당 사업의 지역의 공공부문, 특히 교육기관(대학이나 연구소 등)과 연결할 경우의 이점이 있다는 사항도 알 수 있었다.

2. 유형별 모형 제안

이러한 내용 중, 본 모형구조에서는 제도와 조직, 인력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인력 중 일부와 예산은 모형의 운영 부문에서 구체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정부문과 민간부문을 이원화하고, 그 이원화 상황에서 조합을 유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모형 1 : 행정부문 내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1은 행정과 행정 또는 행정 부문 내의 부서 간 공유형태를 위한 모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부서 간 공유근거를 제안하는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각 지방공사와 연구원, 행정시로서 제주시와 서귀

포시 간의 공유의 틀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 투자기관이나 행정시의 내부 부서 간의 공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구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은 제도적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내용에 공유기반관련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것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공유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유기반행정담당 팀⁶⁾은 최고 상위기구로서 공유가치를 포용하는 공유행정의 비전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기 공유가치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공유기반행정담당 팀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무팀과 협업을 통해 특별자치도특별법과 조례에 공유기반행정에 지원을 위한 법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의 내용을 제안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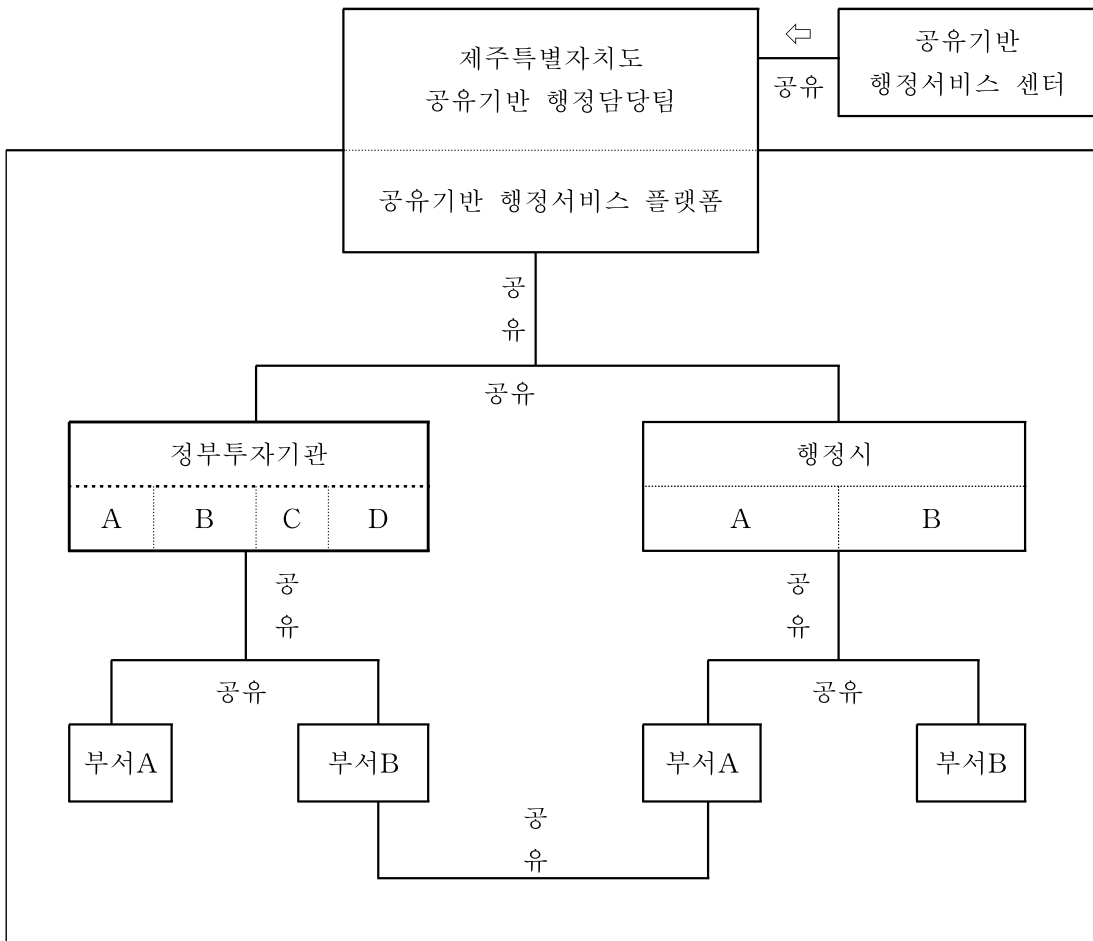
조직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를 설립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 내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공유행정의 인식확산과 관리, 지원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역을 배정한다.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며, 연구를 담당하도록 한다. 법개정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공유기반행정서비스의 전체적인 접근은 공유기반행정 플랫폼을 만들어 내용을 파악하고, 접근하며, 지원을 받고, 성찰과 평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 플랫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기반행정담당 팀에서 직접 운영토록 한다.

인력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부서로서 공유기반행정담당 팀을 신설한다. 이 팀에는 전문인력이 배정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직위분류제적 맥락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거나 전문보직순환제를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팀장은 개방형 임용제로 초빙할 수 있도록 한다.

6) 여기에서 '팀'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청의 현재의 팀이라는 조직도 되지만 포괄적 행정조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 담당팀에는 '국'을 포함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그림 6-1> 행정부문 내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2) 모형 2 : 행정과 민간 부문이 거버넌스형태로 구성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2는 행정과 민간 부문간의 거버넌스형태로 공유하여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모형이다.

행정은 민간과의 다양한 자산, 자원, 정보, 인력 등을 공유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이며, 민간은 다양한 자원을 행정과 공유함으로써 당사자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기여를 통해 개인 혹은 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추구하는 형태이다. 수평적 상태를 전

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진(co-evolution)하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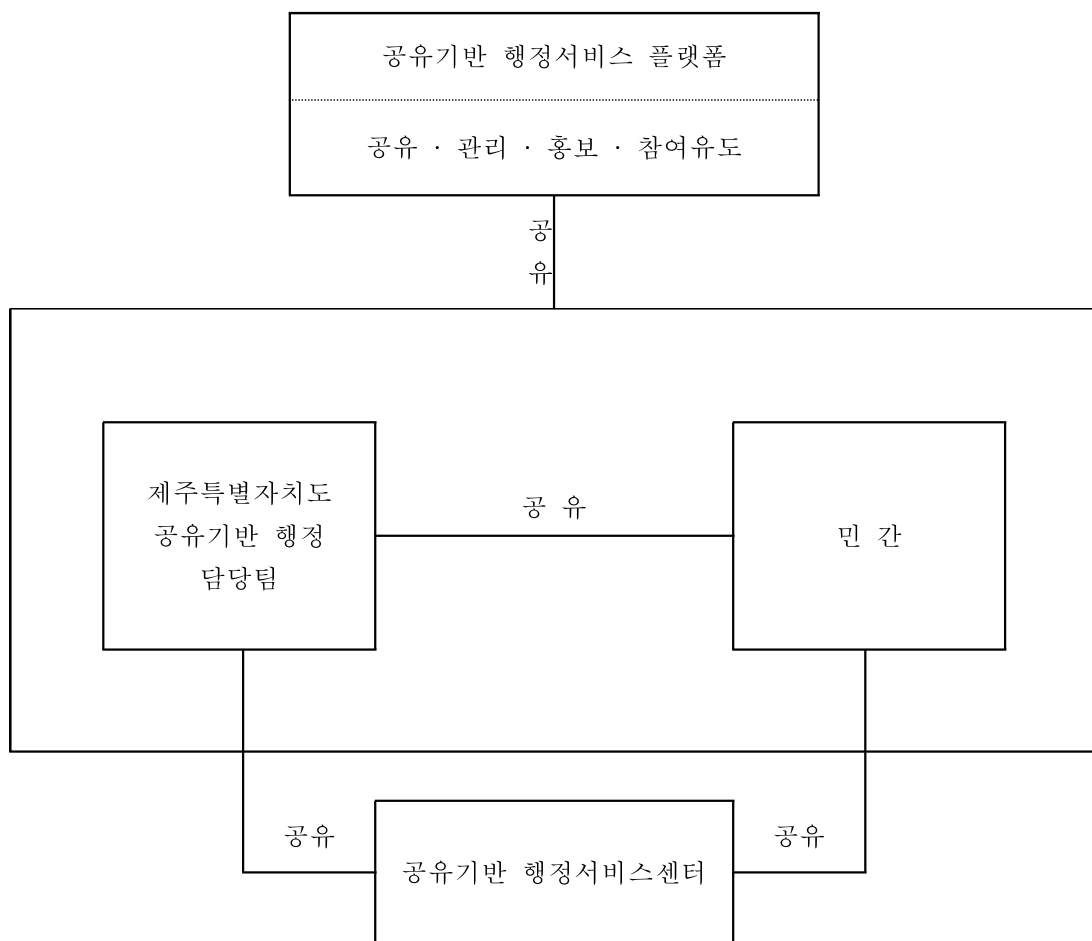
제도적 측면에서는 모형 1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 관련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민간의 자산이나 정보 등을 공공이 공유하여 활용하였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거나 다른 제도적 접근을 통하여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고, 이 모형의 성공을 담보하는 성공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행정부서로서 공유기반 행정담당 팀을 두어 공유행정영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공유행정기반담당 팀은 모형 1의 역할과 마찬가지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유가치를 포용하는 공유행정의 비전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장단기 공유가치확산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법무팀과 협업을 통해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에 공유기반행정에 지원을 위한 법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도록 한다.

제3의 기구로는 제주지역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 내에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공유행정의 인식확산과 관리, 지원을 위한 퍼실리테이터 역을 배정한다.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며, 연구를 담당하도록 한다. 법 개정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전체적인 접근은 공유기반행정 플랫폼을 만들어 내용을 파악하고, 접근하며, 지원받고, 성찰과 평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 플랫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기반행정 담당팀에서 직접 운영토록 한다.

인력적 측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유기반행정 담당팀에는 전문인력이 배정되도록 하며, 전문보직순환제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에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민간부문에서의 공유하고자 하는 자산 조사, 행정 부분에서 상용할 수 있는 영역과 그에 따른 민간부문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2> 행정과 민간의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3) 모형 3 : 민간부문 간 협력을 통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3은 행정 부문이 민간부문 간의 공유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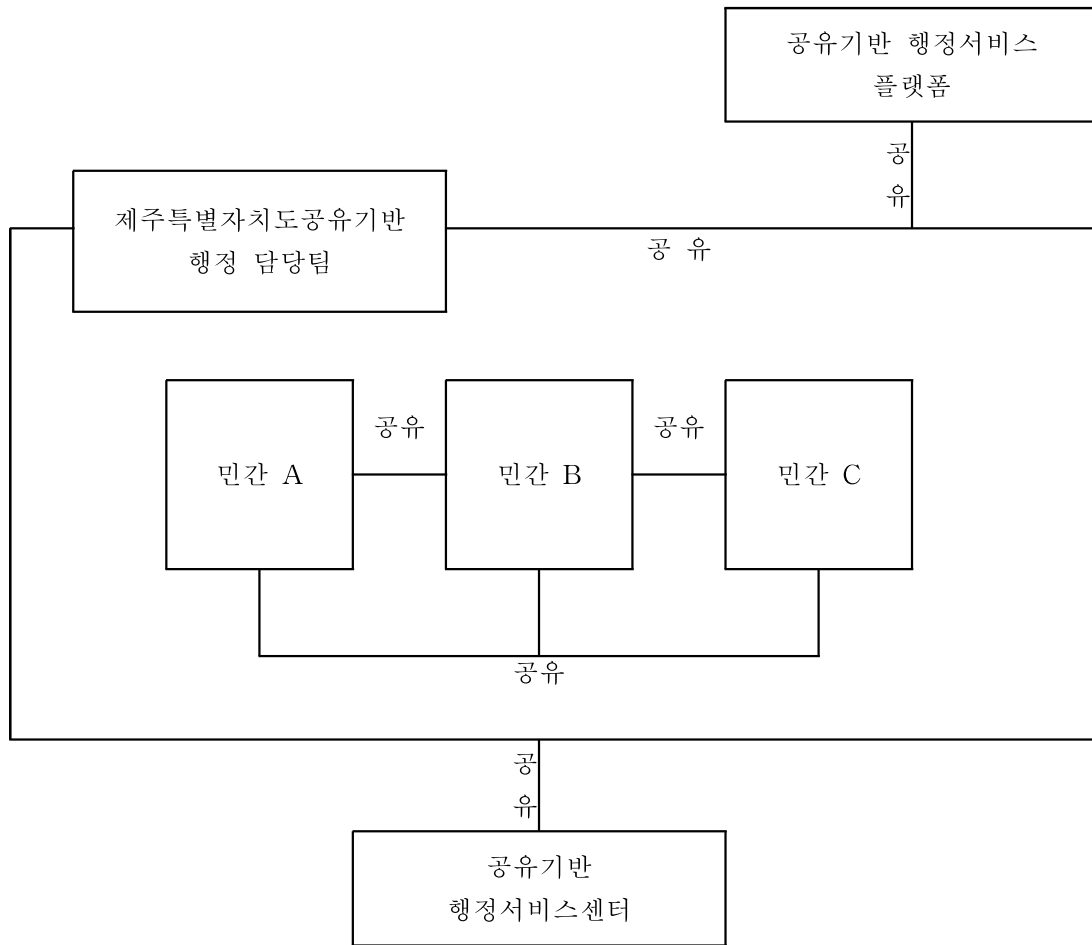
행정 부문은 관조적 입장에서 지원하는 관계국가모형과 다이아몬드 이론적 접근의 국가론 맥락이다. 민간부문 간의 공유가 주체가 되고, 행정 부문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반을 마련해주며, 각종 비용 등에 있어서 제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내용에 이러한 민간부문 간의 공유가 가능하고, 그 공유를 통해 행정서비스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용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부문 간의 공유가능영역과 범위를 설정해주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정체성과 행정이 보유한 자산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하고, 지원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영역은 민간부문 간의 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을 만들고 소개하며, 공모에 응하도록 적극적 행정을 펼치게 된다. 행정이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게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유희자산의 내용을 알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행정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공유의 주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 평가를 담당하여, 성찰 구조를 만들게 된다. 행정은 공유수요가 있는 제주지역 전체의 민간부문들이 접근할 수 있고,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에 대한 접근이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관리한다.

조직적 측면에서 제주도 내에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담당팀을 만들어서 모형 1과 모형 2에서 언급한 내용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센터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앞의 모형 1과 모형 2에서 언급한 내용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그 내용이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획과 지원, 관리는 하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체는 민간이 되도록 하는 맥락에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 모형 3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센터는 민간간 연결과 중재 노력을 해야 하며, 공유의 기술을 축적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봉사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고, 제안하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인식확산에 대한 노력, 교육 담당의 역할은 앞의 모형 1과 모형 2의 영역과 비슷하다.

인력적 측면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센터에 투입하는 것도 방법이며,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도록 하여 그 기관에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 6-3 > 민간부문 간 협력을 통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4) 각 모형별 특성 요약정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형별 특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는 의미는 어느 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모형의 트랙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또한 분야별로 다른 특성과 준비해야 할 요소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리하였다.

<표 6-1 > 모형별 특성 정리

	모형 1 : 행정부 문내의 공유 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2 : 행정과 민 간 부문이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공유 기반 행정서비스 모 형	모형 3 : 민간부 문 간 협력통한 서비스 제공의 공유기반 행 정서비스 모형
모형 개요	행정과 행정, 혹은 행정 부문내의 부서 간 공유형태를 위한 모형	행정과 민간 부문간 의 거버넌스형태로 공유하여 행정서비 스를 창출하는 모형	행정부문이 민간부 문 간의 공유를 통 해 행정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유 도하고 지원하는 내 용을 담은 모형
제도적 측면	기본계획수립, 조례 제정, 연간 보고서 작성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민 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 거 마련	행정자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근거 마 련, 민간부문에 지 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형평성 있는 지원 제도 마련
조직적 측면	공유기반 행정서비 스 공유센터 신설, 플랫폼 신설, 공유 기반 행정 팀 신설	모형 1과 같음	모형 1과 같음. 추 가적으로 민간부 문에서 주체적 역할 을 할 수 있는 센터 등 이 필요
인력적 측면	전문인력 배정, 전 문보직순환제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퍼실리테이터 양성	전문인력 투입과 전문성 확보, 퍼실 리테이터 양성, 민 간부분 공유기반 조 사	민간 부문이 주체가 되도록 하여 그 센 터에 공유기반 행정 관련 전문가를 투입 할 필요가 있음
예산적 측면	행정 부문내의 조직 과 인력 투입을 위 한 예산, 기본계획 수립과 연간보고서 등의 예산 정도 투 입 근거 마련	행정과 민간부문 간 의 공유기반을 구축 할 때 행정부문의 지원 근거 마련	민간 간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생산과 제공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2절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조례안 제안

제주지역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모형을 제안하
는 과정에서 반영한 공유요소 사항들을 적용하여 제안하였다.

조례는 다음과 같은 틀로 구성하였다.

- 목적
- 정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 민간부문의 역할과 참여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 내용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지원
-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지원
- 보조금 등 지원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설치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운영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설치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운영

1. 제주지역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조례안 내용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목적

본 조례안의 목적은 제주지역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개념 도입,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제도와 조직적 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성공과 축진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에 있다.

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란 행정과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자원, 정보 등을 함께 사용하고 협력 활동을 통해 행정 서비스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둘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란 공공부문 내의 중복업무를 공유화하여 효율을 높이고, 행정과 민간부문의 공유를 통해서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조직,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체계가 정립되어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제주도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4) 민간부문의 역할과 참여

민간부문이란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행정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생산하면서 행정을 지원하거나 공공부문과 협력하여 행정서비스 유형을 만들어내는 기업과 법인, 개인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하나의 주체로서 행정서비스의 생산에 참여하게 되며 공공부문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5)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 내용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과 조례에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내용을 올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작업이다.

6)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지원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서부터,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지원하며,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조직과 인력 측면의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공유기반 행정 담당팀’을 신설하고 전문직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센터를 조직하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조직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예산 측면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위한 일반예산을 통한 지원과 민간부문과의 공유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보조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7)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지원

민간부문과의 협력과 지원이란 민간부문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민간부문 간의 공유를 위한 활동에 행정이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8) 보조금 등 지원

보조금 지원은 민간부문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공공부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예산의 형태를 말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는 민간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구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중 일부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운영 관련 비용 등

9)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촉진위원회의 설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촉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두는 위원회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고 관리한다.⁷⁾

10) 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촉진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주문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논의하고 자문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체계화할 때 자문하며,
- 보조금관련 항목에 대해 자문한다.
- 보조금관련 심의하여 자문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가 된다.

11)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두거나 외부에 제3조직으로 두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체계화와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게 한다.

1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인식확산과 체계화를 위해 연구와 홍보를 수행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 대한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하여 행정과 민간, 민간과 민간 사이의 공유활동을 지원한다.

7) 이 촉진위원회는 심사기능도 포함하는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설문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모형에서는 촉진위원회로 명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심사내용도 포괄하도록 하였다.

13)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설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은 행정과 민간, 개인 부문의 주체들이 소통과 정보 교환, 각종 지원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4)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 운영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원하는 제주도민들의 요구 수렴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주체가 될 수 있는 행정과 민간, 개인들의 요구 사항과 각종 성찰 사항 등을 온라인상에 올릴 수 있도록 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듣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서로 연결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주도정에 요구하는 창구기능을 한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피드백을 시행한다.

제3절 정책제언

1. 제도적 측면의 정책제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구를 위한 조례와 규칙제정이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것이 자명할 것이라고 보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진과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특별시 공유(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공유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관한 내용들, 보조금 지원 근거, 공유기업에 대한 지원, 공유촉진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둘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이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제안하는 공유서비스 방안에 대해 성공할 수 있도록 심사와 추가적 제안을 해주는 것이다.

셋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구성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ID 부여 후 접근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일반 고객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플랫폼을 우선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 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된 개인 ID를 부여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과세 기준의 정비이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될 때는 납세 기준을 만들고, 한편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대상의 경우는 공급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확대,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구축, 카쉐어링과 같은 O2O서비스 공급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신고 의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⁸⁾

다섯째, 각종 분야의 표준화 구축이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는 공공 부분이 역할을 하면서, 이면에는 공공 개입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종 체계와 데이터 등에 표준화 체계를 구축해 두는 것이다.

여섯째, 민간부문이 참여하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구축이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버넌스에 참여할 경우, 그 민간주체가 정보를 구득할 경우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등의 인센티브이다. 경제적 인센티브도 생각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정보 등을 활용하는 공공서비스 형태의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2. 조직과 운영 측면의 정책제언

첫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

8)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의 모색이다.

우선 체계와 조직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그 운영체계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과 관리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권한의 부여가 중요하다.

둘째, 지방정부의 빅데이터 공유서비스의 플랫폼 개설과 접근성에 대한 홍보이다.

지방정부에서는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인식 정도는 낮은 상태이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공모대회를 개최하고,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안받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홍보차 원에 덧붙여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받을 수 있다.

셋째, 이익과 비용의 규정과 분배의 공정성 확보이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통한 이익과 비용을 객관적으로 정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형평성 있게 분배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유촉진위원회에 전문직을 투입하여 간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확보가 선결 요건이어서 전문직 공직자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플랫폼에 대한 지원의 확대이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참여하기 쉽게 하되, 그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과세 지원 혜택을 주거나 소비자나 참여자에게 빅데이터의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인력 측면의 정책제언

인력 측면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이나 지방정부도 공유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의 각종 중간조직인 센터 등에 공유기반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담당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 내에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은 교육과 의견수렴,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4. 예산 운영상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예산 운영상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담당팀에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지원센터의 경우 일반회계와 보조금 지원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둘째, 특히 민간부문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에 이바지하거나 성공사례의 경우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5.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련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촉진 계획의 수립이다.

계획은 민간, 기업, 공공기관, 지방정부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와 참여 체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둘째, 참여 주체 간의 조직, 기술, 지식 등의 다차원적 관점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조직구성원인 개인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동기요인은 각각이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유의 인식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지식이나 정보 등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공유에 대한 행위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체계는 인간중심의 관리전략에 관심을 주로 가져야 한다.

제도적 접근 기본적 값이고 인간중심의 행태적 접근 또한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에도 명시 지식은 인공지능 등 IT로 공유체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지만 암묵 지식은 제도적 접근으로는 불가하고, 사람 간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과 상호 존중감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해야 한다(김구, 2017, 16).

넷째,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지속적 발굴과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성공적 이룩을 위해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대상과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찾는 노력과 그 노력이 정착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7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공유기반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 요소를 제시하고, 그 요소를 반영하는 모형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크게 두 영역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델파이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구성한다. 둘째, AHP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중요 요소를 도출한다. 셋째,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의 모형을 구축한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에 따른 모형 구축과 조례 제안, 그리고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소에 대한 인식은 제도, 인력, 조직, 예산 순으로 대분류된다. 중요 요소들의 전체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위) 정부 계획수립
- (2위) 전문인력의 채용
- (3위) 조례 신설
- (4위) 행정조직 신설
- (5위) 공유관련 DB 구축
- (6위)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
- (7위) 공직자 사전교육
- (8위) 소통전문가 양성
- (9위) 국내외사례분석
- (10위) 개인정보 보호 강화
- (11위) 심사위원회 신설
- (12위)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 (13위)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 (14위)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 (15위) 특별회계의 틀 설정
- (16위)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17위)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 (18위)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 (19위)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 (20위) 공유자산 확보

이러한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모형 1. 행정부내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2. 행정과 민간부문이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모형 3. 민간부문 간 협력 통한 서비스 제공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조례를 제안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제도, 조직, 인력, 예산 측면에서 제안했다. 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제언도 추가하였다.

현시점에서 제주지역의 공유기반 행정서비스가 체계화되려면 먼저 공직에서의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 거버넌스적 접근, 협동 생산적 접근, 민간기법의 도입과 수익배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도입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유기반행정의 가치에 대해 공직 담당자들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국가모형의 맥락에서 거버넌스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고문헌

- 권기현(2007), “정부개혁의 방향과 과제 : 정부혁신, 행정개혁, 그리고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제2권 제1호, 2007.6, pp.5-39.
- 김경섭(2010), “행정정보 공유의 패러다임 변화와 전망,”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 논문집」, pp.1-26.
- 김 구(2017), “시스템사고에 입각한 행정기관의 지식공유 통합 모형화를 위한 탐색적 접근 :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의 인과지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제26권 제2호, pp.147-178.
- 김동영(2011), “뉴거버넌스와 갈등관리 제도 : 규제와 자율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135권, 2011.12, pp.8-13.
- 김민주(2015), “공유자산의 자치적 관리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부산 가덕도 대항마을의 승어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보」 제49권 제3호, 2015 가을, pp.51-77.
- 김상민·임태경(2019),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인성·황경수·오윤정(2014), “제주지역 협력(수눔음)형 사회적 자본 증진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탐라문화」 제45호, 2014.2., pp.87-117.
- 김창기(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유경제의 위험관리,” 「글로벌금융리뷰」 제1권 제1호, 2020.9, pp.71-101.
- 로나골드 지음, 안명옥·하윤희 옮김(2012), 「공유경제」, 조운커뮤니케이션.
- 박정환·오정미(2009), “범정부 행정정보 공유 정책에 관한 고찰 : 주요쟁점 및 정책시사점,”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7권 3호, pp.245-273.
- 박태완(2017), “국가 농업기술 공유 네트워크(농사로),”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pp.1119-1133.
- 신영복(2005), 「나의 동양고전 독법 강의」, 돌베개.
- 안명옥(2012), “한국형 공유경제를 꿈꾸며,”로나 골드 지음, 안명옥·하윤희 옮김 「공유경제」 조운커뮤니케이션, pp.372-400.
- 오정민·이상호(2019), “공유경제가치,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 - 숙박공유 서비스 지식보정(knowledge calibration)의 조절효과,”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제43권 제8호(통권 174호), 2019.11, pp.11-30.
- 이규영(2015),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의 재정립과 구조화,”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41권 3호, pp.117-143.

- 이명석(2006), “제도, 공유재 그리고 거버넌스,”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44권 2호, pp.247-275.
- 이상호(2019), “공유경제와 복지 : 벤클러 공유경제 모델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67권 3호, pp.189-214.
- 임채원·김병섭(2012), “글로벌 위기의 대응으로서 ‘공유가치성장’과 ‘관계국가모형’,”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제50권 제3호, 2012.9, pp.295-326.
- 조근태(200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동현출판사.
- 조성찬(2015), “공유자원 상품화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모델의 구조적 한계,”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5, pp.487-520.
- 조성찬(2016),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댄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의 비판적 검토 - 토지 및 지대의 사유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제26권 2호(통권 56호), pp.44-79.
- 최성락(2012), “한국 LED 조명 산업경쟁력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 :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26권 1호, pp.103-127.
- 홍길표·정충식·김판석(2014), “협업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공유서비스센터 도입방안 연구-정부 공유서비스센터 선진국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정책」 제21권 제3호, pp.33-55.
- Gould, K. & Magdieli, A (2007). Optimizing Government Effectiveness Through Shared Services: Perspectives from IBM Corporation. IBM Report
- McKinsey & J.P. Morgan (2004). Moving Towards 정보화정책 제21권 제3호 정보화정책 Global Shared Services Centers, JPMorgan Treasury Services. May 2004. NAO (2012). Efficiency and reform in government
- NAO(National Audit Office)(2007), Improving corporate functions using shared services. UK NAO Report(<http://nao.org.uk/publications>).

【부록 1】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을 위한 전문가(델파이) 조사
(1단계)**

안녕하십니까?

저 박종명은 이번 박사논문을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 관련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논문 주제가 현장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의 내용이어서 선생님들의 고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에 선생님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히 주관적 의견도 좋습니다. 참고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란? 첫째, 행정 부문 내에서 정보와 공간, 조직, 인력 등의 공유를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행정과 민간부문의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셋째, 민간부문 간의 공유활동을 행정 부문이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1. 이러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제주지역의 이러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가 기존에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 특징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논문청구자 박종명 : 010 7113 1950

지도교수 황경수 : 010 3697 5912

추가했으면 하는 상을 적어주십시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국 단위의 조직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 이룩을 위한 상위법과 그 권한을 가지는

조례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위한 공직자 사전교육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부의 계획수립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특별회계의 틀 설정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 행정서비스 공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소통 공간의 확보
- 행정서비스 공유 관련 인력풀 구성
- 행정서비스 공유관련 피드백 체계구축
- 행정 분야 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구축
- 행정서비스 공유로 인한 편의 획득과 사회봉사와의 연결라인 구축
- 행정분야 내 공유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행정 분야 내의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 :)

※ 2라운드까지 도와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없다고 답신해주시면 됩니다.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과 모형
제안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박종명입니다.
 ‘공유기반행정’(Public Based Administration)은 공유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공유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면서 동시에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강할 수 있는 정책 및 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본 연구는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주요 요소 도출과 모형 제안 연구’를 목적으로 제주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소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바쁜 시간 중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0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박종명
 지도교수 황경수
 연락처 010-7113-1950

1. 응답자 인적사항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① 20대 이상 ~ 30대 미만	② 30대 이상 ~ 40대 미만	③ 40대 이상 ~ 50대 미만
	④ 50대 이상 ~ 60대 미만	⑤ 60대 이상	
학 령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직 업	① 정부기관	② 대학	③ 공공연구소 ④ 민간기업
경 령	년		

2. 설문 응답 방법

○ 본 조사에서는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1 비교 (쌍대비교)를 통해 2가지의 비교 대상 중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높은 점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평가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도		1	3	5	7	9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용어	동등	조금 중요	상당히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설명	동등한 수준 (equal)	조금 중요 (moderate strong)	상당히 (strong)	대단히 중요 (very strong)	절대적으로 중요 (absolute)

* 2, 4, 6, 8은 근접해 있는 두 개의 척도들 사이의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 설문 응답 예시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연비’와 ‘가격’ 2가지 요소만을 고려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비에 대한 중요성’과 ‘가격에 대한 중요성’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는 척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연비가 가격에 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연비 쪽 척도 ‘7’란에 √ 표를 하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	← 중요									중요 →									평가 항목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조금 중요	동등	조금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연비			√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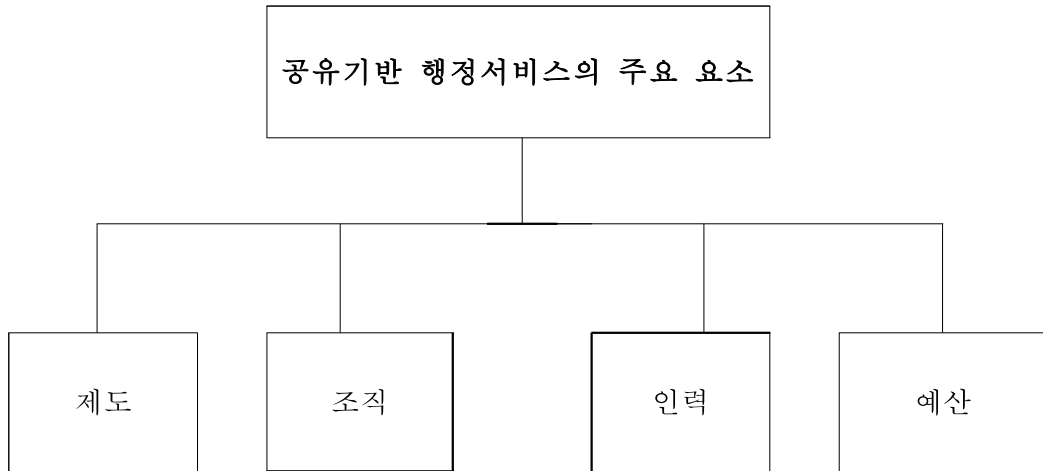
* 2, 4, 6, 8은 근접해 있는 두 개의 척도들 사이의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3. 설문대상 관련 설명

< 1 단계 > 4개의 주요 요소 간 상대적
중요도 평가

■ 본 조사에서의 설문 대상은 제주도에 적합한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결정 요인에 대한 주요 요소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 1단계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주요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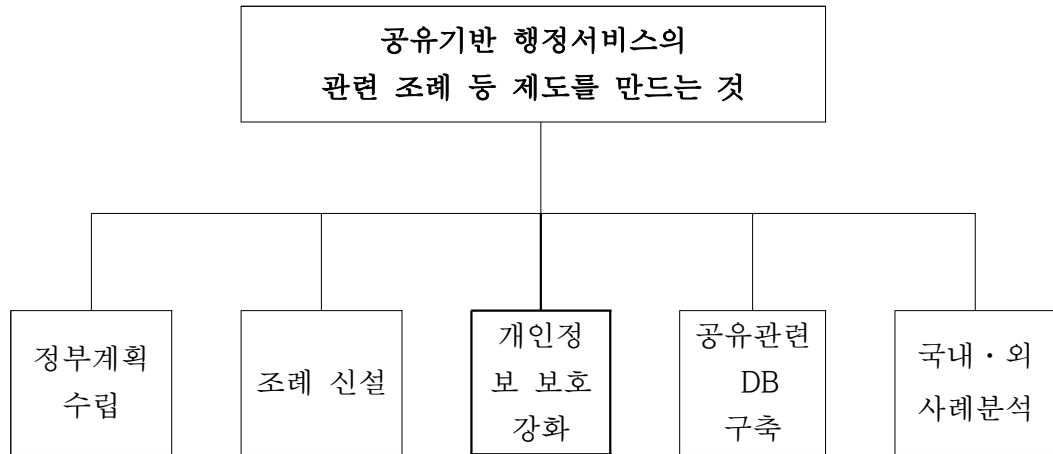


	주요 요소	개념
1	제도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조례 등 제도를 만드는 것
2	조직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관련 조직을 만드는 것
3	인력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
4	예산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인 중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공유기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요소가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	중요 <-----> 중요																	지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제도																		조직
제도																		인력
제도																		예산
조직																		인력
조직																		예산
인력																		예산

< 2단계 > 제도 관련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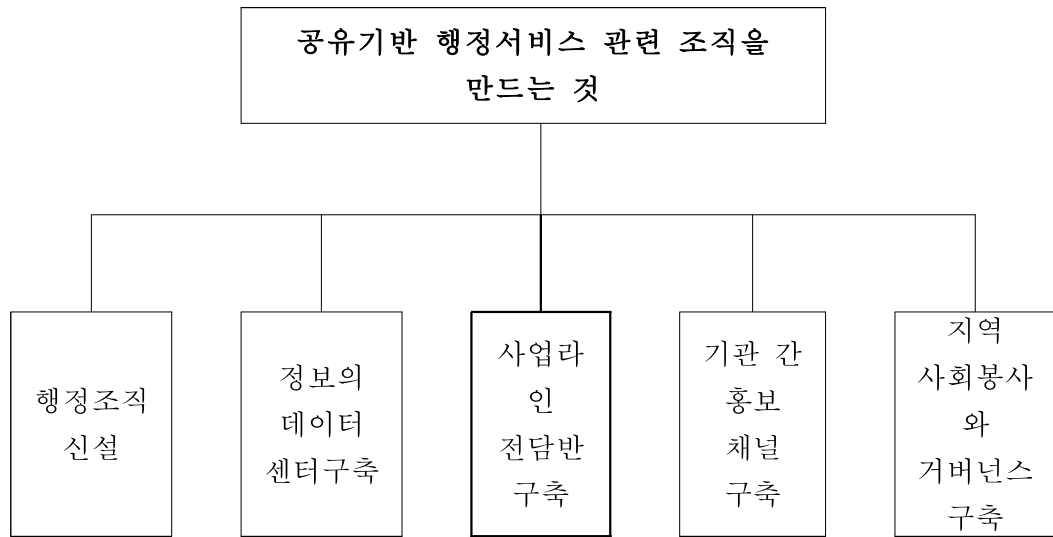
■ 다음은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인 중 ‘제도’에 대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 바랍니다.

요 소	주요 내용	세부 설명
제도	정부계획 수립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의 계획수립
	조례 신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조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 보안장치 마련
	공유관련 DB 구축	행정서비스 공유관련 피드백 체계를 통한 DB 구축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외 제도 관련 사례분석과 비교한 모니터링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인 중 ‘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내용이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	중요 <-----> 중요																		지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정부계획 수립																		조례 신설	
정부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강화	
정부계획 수립																		공유관련 DB 구축	
정부계획 수립																		해외사례 분석	
조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강화	
조례 신설																		공유관련 DB 구축	
조례 신설																		해외사례 분석	
개인정보 보호강화																		공유관련 DB 구축	
개인정보 보호강화																		국내·외 사례분석	
공유관련 DB 구축																		국내·외 사례분석	

< 2단계 > 조직 관련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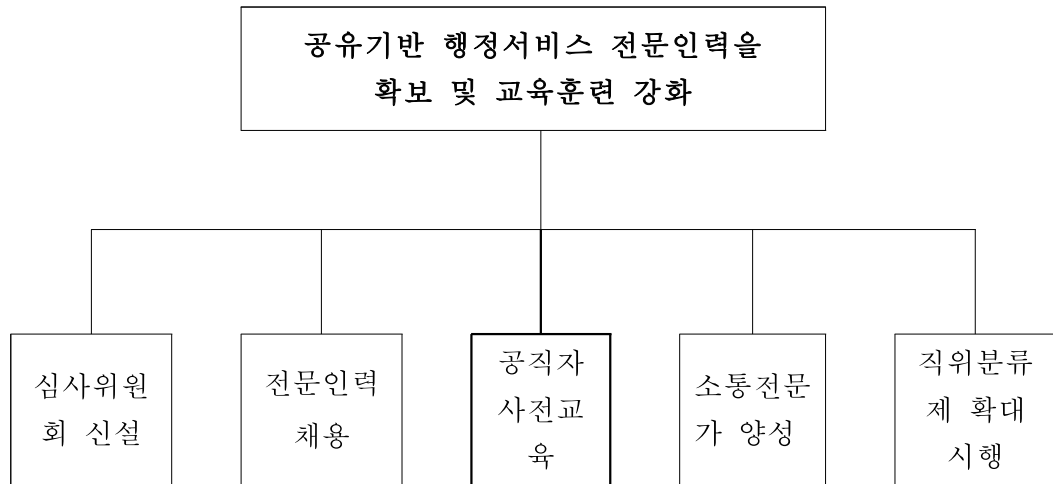
■ 다음은 ‘공유 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인 중 ‘조직’에 대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 바랍니다.

요소	주요 내용	세부 설명
조직	행정조직 신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관리를 위한 국 단위의 행정조직 신설
	정보의 데이터 센터구축	행정서비스 정보의 데이터센터구축
	사업라인 전달반 구축	행정 분야 내에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별 사업라인 기획단 구축
	기관 간 홍보 채널 구축	공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관, 민-관 간 홍보 채널 구축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지역 사회봉사 단체들과 행정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인 중 ‘조직’에 대한 주요 내용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요소가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	중요 <-----> 중요																	지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행정조직 신설																		정보의 데이터 센터구축
행정조직 신설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행정조직 신설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행정조직 신설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정보의 데이터 센터구축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정보의 데이터 센터구축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정보의 데이터 센터구축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사업라인 전담반 구축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기관 간 홍보채널 구축																		지역 사회봉사와 거버넌스 구축

< 2 단계 > 인력 관련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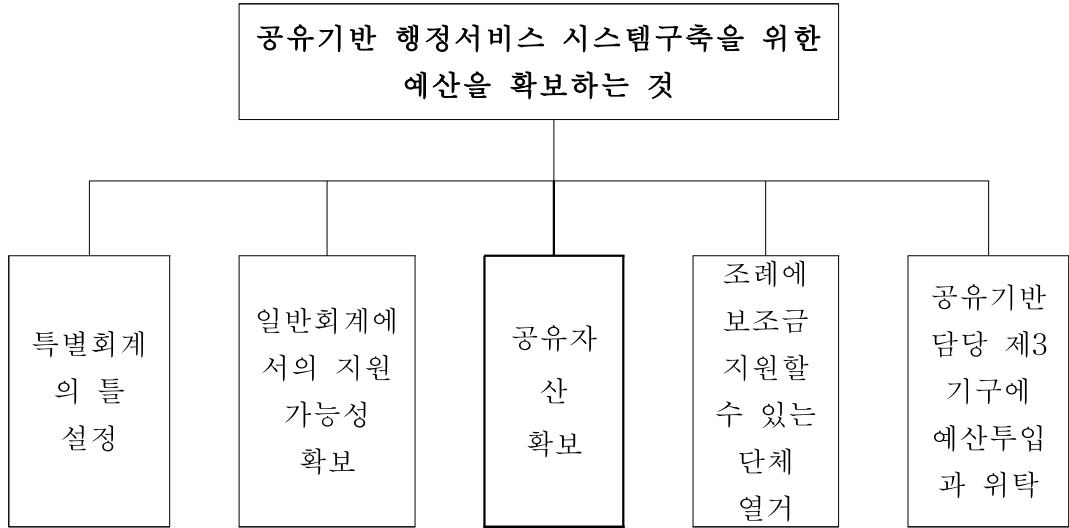
■ 다음은 ‘공유 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인 중 ‘인력’에 대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 바랍니다.

요소	주요 내용	세부 설명
인력	심사위원회 신설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사업 지원 우선순위를 위한 심사위원회 신설
	전문인력의 채용	공유행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채용
	공직자 사전교육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체계를 위한 공직자 사전교육
	소통전문가 양성	행정서비스 공유에 관련 소통전문가 양성 교육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행정 분야 내의 공유서비스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인 중 ‘인력’에 대한 주요 내용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요소가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	중요 <-----> 중요																	지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심사위원회 신설																		전문인력 채용
심사위원회 신설																		공직자 사전교육
심사위원회 신설																		소통전문가 양성
심사위원회 신설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전문인력의 채용																		공직자 사전교육
전문인력의 채용																		소통전문가 양성
전문인력의 채용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공직자 사전교육																		소통전문가 양성
공직자 사전교육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소통전문가 양성																		직위분류제 확대 시행

< 2단계 > 예산 관련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 다음은 ‘공유 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인 중 ‘예산’에 대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숙지 후 응답 바랍니다.

요소	주요 내용	세부 설명
예산	특별회계의 틀 설정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특별회계의 틀 설정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체계에 대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공유자산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의 경우 공유할 수 있는 자산 확보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진 조례에 공유기반 거버넌스 참여 단체들을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열거
	공유기반 담당 제3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공유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제3기구, 센터 등에 지방예산 투입하여 위탁 가능 체계구축

■ ‘공유기반 행정서비스’의 주요 요인 중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 우선순위를 묻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어떤 요소가 얼마나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	중요 <-----> 중요																		지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특별회계의 틀 설정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특별회계의 틀 설정																		공유자산 확보	
특별회계의 틀 설정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특별회계의 틀 설정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공유자산 확보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일반회계에서의 지원 가능성 확보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공유자산 확보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공유자산 확보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조례에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단체 열거																		공유기반 담당 제3 기구에 예산투입과 위탁	

■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